

학교폭력 근절 대책 세미나

일시 2012. 2. 8.(수) 14:00 ~ 17:00

장소 대검찰청 베리타스홀

대검찰청

목 차

▶ 제1주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방안 1

- ❖ 주제발표 | 김 영 문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과장 / 3
양 정 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 15
유 석 재 조선일보 기자 / 33
- ❖ 지정토론 | 송 형 호 면목고등학교 교사 / 45
최 순 호 서울중앙지검 검사 / 59

▶ 제2주제 소년사건 처리 개선 방안 63

- ❖ 주제발표 | 김 진 숙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65
- ❖ 지정토론 | 박 은 정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 79

▶ 제3주제 가해자선도 · 피해자보호 방안 87

- ❖ 주제발표 | 성 우 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장 / 89
배 동 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팀장 / 105
- ❖ 지정토론 | 고 금 자 경기대 교수·남부지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 / 107

【제언자료】 123

- ❖ 설 선 국 장원중학교 생활지도부장 / 125

【참고자료】 131

-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133

제 1 주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방안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

김영문(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과장)

“학교폭력 현황 및 예방 활동 방안”

양정호(성균관대학교 교수)

“학교폭력,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유석재(조선일보 사회정책부 기자)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김 영 문 과장(부장검사)

I. 머리말

최근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최근에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수차례 문제가 되어 왔었다.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정부를 비롯한 여러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방활동이 실시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행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모든 학교에 만연하여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물론 아니다. 범죄와 무질서의 상징이던 뉴욕이 지하철 무임승차 단속 등 작은 실천을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한 예와 같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천착하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의 강화, 학교와 교사의 기능 및 권위 회복, 학교폭력 감지시스템

구축 및 적발된 학교 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 등을 잘 시행하면 학교폭력은 과거의 추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Ⅱ.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은 약육강식이라는 인간의 동물성이 발현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성품인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적인 교육의 부족과 가해학생들의 동물성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 통제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교사 권위의 붕괴 및 역량 부족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는 입시를 위한 내신점수를 받는 곳으로 변질되어 있다. 학교에서 교사는 단순 직장이고, 학생은 학원을 가기 위한 전 단계, 학부모는 낮시간에 자녀를 맡아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교육행정처리를 주로 담당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 실제 지식은 학원에서 배우고, 평가 역시 학원에서 익힌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개입여지가 적다. 또한, 일부 교사들의 촌지수수 등 불법행위로 인해 학부모들로부터 무시되는 분위기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권위가 떨어진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권이 보다 위축되고 있다. 심지어 학생들로부터 폭행 및 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서 학교폭력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는 권위 추락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사건을 숨기거나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사들의 실태이므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학생들의 인식미비 및 인성교육의 부족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들은 사회에서 느끼는 것과 같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빵을 사다달라거나, 게임의 캐릭터를 키워 달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할 뿐 범죄가 된다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해학생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한 행동들은 피해자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인성교육이 부족하다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이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다. 배려, 공감, 나눔 등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도 함께 배우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배려, 공감 등 인성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객관성을 이유로 선다형의 객관식 시험이 주를 이루고, 지식적인 부분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성교육이 입시에 반영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인성교육을 목표로 실시되는 수행평가·체험활동·봉사활동 등도 모두 점수획득의 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3. 학교폭력 통제 시스템의 미흡

학교폭력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되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였다. 학교폭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교과부에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교사는 전체 사건의 1/10만 알고 있고, 학부모는 교사의 1/10만 알고 있다는 말처럼 학교폭력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물론 피해학생들은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도 하지 않는다. 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어느 곳에 하여야 하는 지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간혹 신고를 하여도 경찰과 법원에서 관대한 처벌을 하여 다시 피해자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알려지게 하지 않는 것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표1 - 학교폭력 관련 소년사범 추이]

단위 : 명 (%)

연도		1995	1996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폭 력 사 범	처리	46,696	47,794	~	21,729	20,942	18,051	23,161	33,923	29,380	23,135
	폭행			~	435 (2.0)	455 (2.2)	1,545 (8.6)	2,482 (10.7)	4,347 (12.8)	3,502 (11.9)	3,376 (14.6)
	상해			~	887 (4.1)	901 (4.3)	2,168 (12.0)	2,773 (12.0)	3,749 (11.1)	3,006 (10.2)	2,797 (12.1)
	공갈			~	219 (1.0)	238 (1.1)	405 (2.2)	562 (2.4)	1,046 (3.1)	1,495 (5.1)	1,422 (6.1)
	폭력 행위등			~	20,188 (92.9)	19,348 (92.4)	13,933 (77.2)	17,344 (74.9)	24,781 (73.1)	21,377 (72.8)	15,540 (67.2)

[표2 - 소년사범 구속률 현황]

연도	1995	1996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11)
접수 (명)	131,896	147,028	~	92,976	86,014	92,643	116,135	133,072	134,155	105,033	94,643
구속 (명)	31,027	28,050	~	6,075	4,382	3,225	3,017	2,744	2,577	2,089	1,721
구속률 (%)	23.5	19.1	~	6.5	5.1	3.5	2.6	2.1	1.9	2.0	1.8

[표3 - 소년사범 처분 결과]

단위 : 명 (%)

연도	1995	1996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24,244	137,503	~	93,060	85,904	92,788	115,991	133,320	134,053	104,998
불기소	65,311 (52.6)	73,435 (53.40)	~	51,130 (54.9)	50,219 (58.5)	57,026 (61.5)	69,724 (60.1)	87,171 (65.4)	86,710 (64.7)	60,294 (57.4)
기소	46,150 (37.1)	49,586 (36.1)	~	21,125 (22.7)	15,197 (17.7)	13,287 (14.3)	13,855 (11.9)	11,232 (8.4)	7,936 (5.9)	6,855 (6.5)
소년보호 사건송치	12,783 (10.3)	14,482 (10.5)	~	16,160 (17.4)	16,814 (19.6)	18,157 (19.6)	26,950 (23.2)	29,561 (22.2)	33,871 (25.3)	32,227 (30.7)
			소년 원	2,087 (12)	2,002 (11)	1,734 (9.5)	1,760 (6.53)	1,619 (5.4)	1,911 (5.64)	1,667 (5.1)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발생 여부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도구와 체계도 없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Ⅲ.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학교폭력의 원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면 학교폭력은 예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권위 확립 및 역할 정립

학교폭력을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은 교사이다. 교사들이 정확하게 가해 학생들이 거치게 될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심각한 학교폭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가. 교권의 확립

그 첫 번째는 바로 교사들의 교권의 확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평가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부의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 역시 대학입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교육의 시스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으나, 간접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대학입학사정관제, 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입학전형을 통하여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사건에 관여되었는지 여부와 학교폭력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학전형에서 사용되는 자료를 학교의 교사들이 작성하게 한다면 지금처럼 교사들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 학생들의 자율성 강화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교수권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 주장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만큼 중요한 것이 교사들의 교수권이다. 이 둘은

상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모두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것인 것만큼 적절한 조율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의 형성이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학부모는 제공한 금품에 상응한 특별대우를 원하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단순한 직업의 하나가 아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선생이 될 수 있도록 학생에게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학부모는 내 아이만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버리고 교사를 믿고 자녀의 지도를 맡겨야 한다. 이러한 믿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학교의 모든 과정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개방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 교사들에 대한 법교육 실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가 학교폭력의 발생시에 가해학생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학생은 어떻게 보호받게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간다면 학생이 교사를 믿게 되어 도움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학교폭력법을 비롯한 소년법 등 학교폭력관련 법을 교육하고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비롯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부의 온·오프라인 과정의 직무연수과정 및 법교육 콘텐츠와 교과부의 교사연수 인프라를 적절하게 연계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법교육 연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장, 교사 대상 연수과정에 학교폭력법을 포함한 학교생활에 필요한 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일 것이다.

다. 교사 지원 인프라의 강화

교사가 학교폭력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모든 역할을 교사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짐을 지우게 되어 더욱 회피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되 주위의 도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담교사 및 지역의 상담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게 하고, 학교내에서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의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통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하며, 더욱 심각한 경우에는 정식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교사를 지원하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에게 실효성 있는 법교육 실시

가. 정확한 법교육 실시

모든 범죄는 발생한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각인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하여야 한다. 뺑서틀과 억지로 게임 캐릭터를 키우게 하는 행동이 강요죄에 해당되는 등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행위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소년법과 학교폭력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행하여졌을 때 가해학생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강의 콘텐츠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제작하여 흥미를 유도하여야 한다. 법무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시해온 법교육 출장강연을 비롯한 다양한 법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학 전·후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대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의 유서 등을 활용한 강의안 및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통한 온라인 콘텐츠도 상반기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학교법교육 출장강연을 학교폭력예방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며, 대검 및 범방위원 등과 연계하여 법무부의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 학생자치법정 운영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화와 토론 등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면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편이 되어 줄 수 있게 되어 피해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한 자치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법무부의 학생자치법정이다.

학생자치법정은 실제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절차에 따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결과에 승복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2006년 5개교에서 실시된 이후, 작년에는 388개교로 확대 실시되었다. 금년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들의 자치문화 형성을 위해서 교과부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부터 약 1,000개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다. 학교폭력예방 온라인 콘텐츠 개발

아무리 좋은 교육자료가 있어도 학생, 교사 등 수요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개발되어 있는 콘텐츠는 대부분 종이로 된 텍스트 위주여서 확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이 개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의 개발도 중요할 것이다. 이미 미국은 정부에서 학교폭력예방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웹사이트(www.stopbullying.gov)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11년 12월 개발하여 운영중인 '법사랑 사이버랜드'(사이버 법교육 테마파크)에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를 탑재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학교폭력 관련 게임, 학교폭력 진단 테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수준별로 개발하여 탑재할 것이며, 이러한 콘텐츠를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과 자녀들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가이드도 함께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3. 학교폭력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

가. 학교폭력 감지 시스템 구축

교과부에서는 매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교폭력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발생한 학교폭력을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한 무기명 설문조사는 학교폭력의 존재여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학생과의 면담, 학생자치 조직 활용 등을 통한 학교폭력 감지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나. 신속하고 엄격한 가해자 처벌 필요

학교폭력이 신고되지 않는 큰 이유는 보복 폭행에 대한 우려이다. 이는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을 때, 학교에서는 교사 및 교장의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외부로 알리지 않거나, 경찰에서 사소한 아이들의 싸움으로 치부하여 가볍게 지나지거나, 법원 소년부에서 가볍게 처리하는 등 피해학생의 곁으로 다시 가해학생이 돌아오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학교폭력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청소년이라고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속한 처리로 가해 학생이 자신이 범죄행위를 행함으로서 처벌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 민간단체를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활동 강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만의 대책과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전국의 약 1만 5천여개의 학교를 상대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무부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범방위원들과 연계하여 추진하려고 한다. 대표적으로 법교육 출장강연의 강사로 범방위원들을 양성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를 법무부의 노하우와 범방의 지역 친화력 등을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존의 프로그램의 연계뿐만 아니라 검찰청을 방문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재판 진행, 구치감, 검사실 등 시설견학 및 검사와의 면담 등으로 구성된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범방위원들과의 연계활동을 보다 원활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자 전국 58개 검찰청의 소년전담 검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출장강연 등 프로그램 안내와 범방위원 활동지원 등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물론 학교폭력의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대책도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학교분위기를 바꾸는 것이다.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학교폭력은 범죄이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학생은 도와주고, 가해학생을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법무부나 교과부 등 특정 정부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부처에서 한꺼번에 다양한 정책들이 통일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학교와 민간도 같은 방향에서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대책들과 각 부처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들이 1회성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과정을 점검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학교폭력 현황 및 예방 활동 방안

양 정 호(성균관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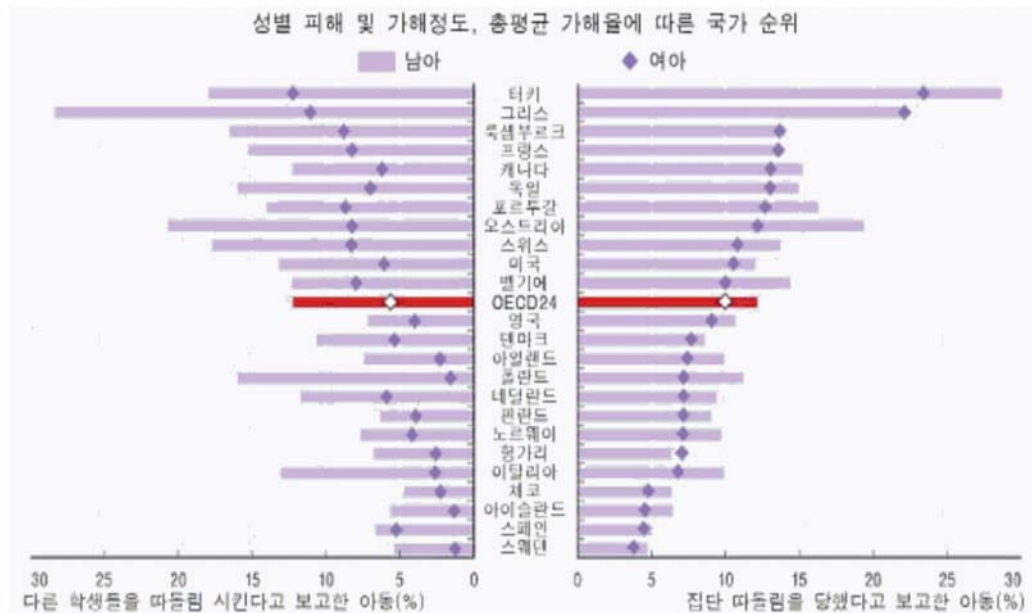
학교폭력 현황 및 예방 활동 방안

양 정 호

201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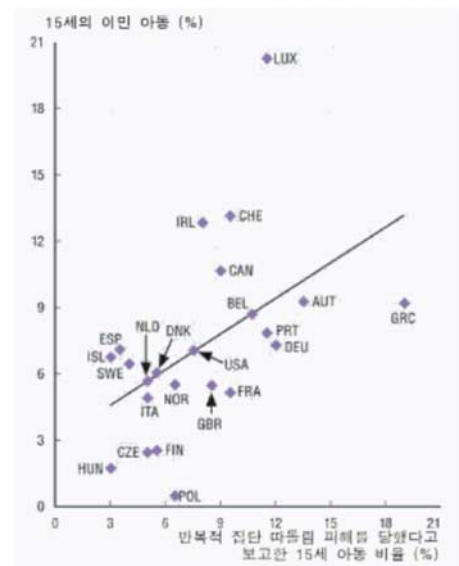


따돌림 가해/피해 국제비율 (OECD,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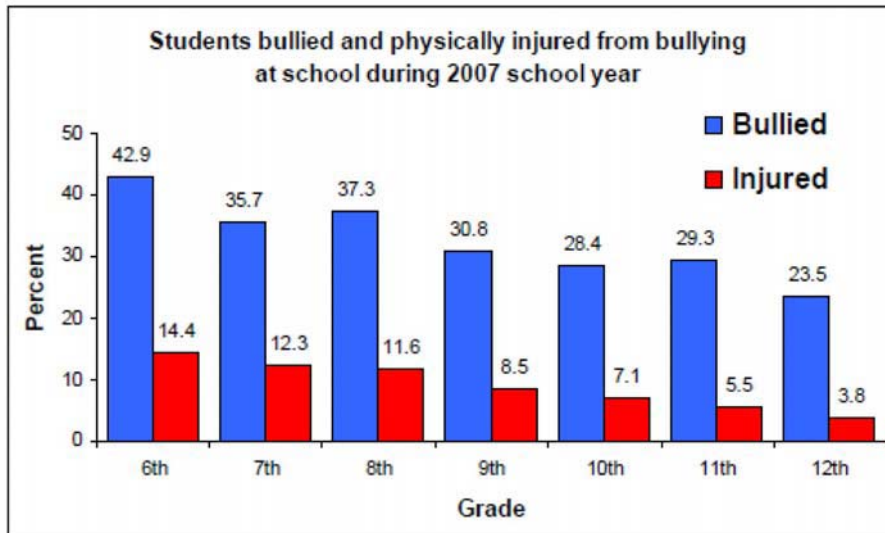


연령별, 이민자별 집단 따돌림 비율(OECD,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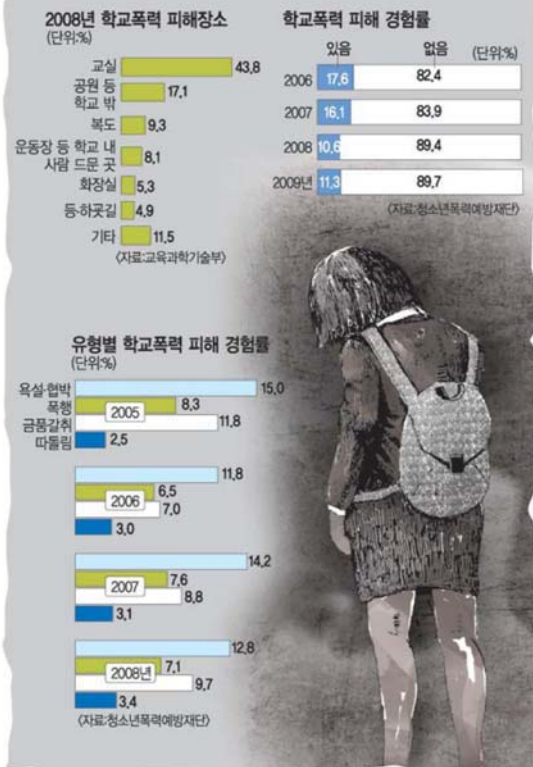
	소녀			소년		
	11세	13세	15세	11세	13세	15세
오스트리아	5	11	11	11	26	26
벨기에	6	6	7	12	11	14
캐나다	6	8	5	10	13	13
체코	2	3	2	3	6	5
덴마크	2	6	5	7	11	15
핀란드	2	4	2	5	6	8
프랑스	6	11	8	13	15	18
독일	5	7	9	9	17	21
그리스	8	13	12	16	28	38
헝가리	2	4	2	3	7	10
아이슬란드	2	1	1	5	6	6
아일랜드	2	3	2	6	7	9
이탈리아	7	6	5	13	12	14
북셀부르크	7	9	10	8	16	24
네덜란드	3	4	5	11	12	12
노르웨이	1	1	3	8	5	10
폴란드	4	6	6	15	14	18
포르투갈	8	9	8	14	15	13
스페인	4	6	6	5	8	7
스웨덴	1	1	2	3	4	9
스위스	5	10	10	13	19	21
터키	16	13	7	21	19	13
영국	2	5	6	4	8	10
미국	8	9	7	11	14	14
OECD24	5	6	6	9	12	14



미국도 학교폭력에 골머리



줄지 않는 학교폭력



학교폭력 대책 흐름, 현실은?

학교폭력 피해자 의료지원...가해자 자진신고면 최대한 선처

국민일보 기사입력 2005-03-04 23:56 | 최종수정 2005-03-04 23:56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4명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당위성을 발표

전체기사

[기자의 눈/이인철]구호만 요란한 '학교폭력 추방'

기사

누리꾼 의견

폰트 | 뉴스듣기 | 여성 | 날씨 | 단축URL |

사회
사회일반

초중고 성폭

기사입력 2006-03-14 03:03:00 | 기사수정 2009-10-08 12:32:24

등록 : 2008.05.14 20:44 수정 : 2008.05.14 20:44

0 0 0 0 0 0 보내기

'귀족-양민-천민-뺑서들' 일그러진 교육현장

MT 기사입력 2009-09-24 11:44 | 기사원문

교육당국, '뺑서들' 조사 착수...가해학생 엄벌 방침

기사입력 2009-10-07 09:02 | 기사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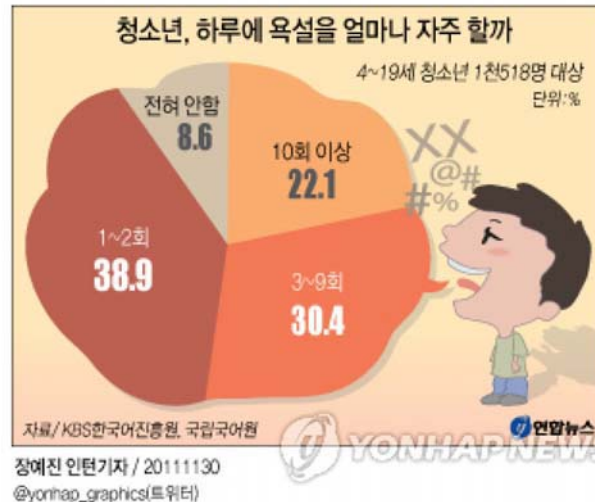
학교폭력 대응, 다음 대책은?

- 1999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 설립
 - 1999년 고교생 집단 난투극 여파
- 200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
 - 2003년 서울 일진회 1200여명 폭력행사 여파
- 2005.2 1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05-2009)
 - CCTV 설치 등 예방 대책 초기 시스템 구축
- 2007.2 학교폭력 예방 근절 15대 중점과제 발표
 - 피해학생 보호 등 예방 대책 위한 인프라구축
- 2008.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2008.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 발표
 - 학교폭력에 성폭력 추가
- 2009.12 2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10-2014)
 - 학생보호 인프라, 신고체제 강화
- 2011.7 '폭력, 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계획 발표
 -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 2012.2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 2011년말 학생자살사건 여파

학생문화:

변화하는 청소년 '욕' 일상문화

- ×발년(놈), 개새끼, ×되다, ×새끼·쌍년, ×나, 병신, 지랄, 닥쳐, 개놈, 년, 따까리, 미친새끼



학생문화:

온라인 웹툰, 변화하는 게임



*넥슨닷컴 게임별 사용자 수 추정

게임명	장르	개발업체	동시 접속자 수
메이플스토리	RPG	넥슨코리아	58만명
던전앤파이터	RPG	네오플	29만명
카트라이더	레이싱	넥슨코리아	4만명(추정)
마비노기	RPG	넥슨코리아	3~4만명(추정)
카스온라인	FPS	넥슨코리아	3만명
바람의나라	RPG	넥슨코리아	2만명
버블파이터	TPS	넥슨코리아	2만명

권역별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 (단위: 백만달러)



학생문화:

손쉬운 스마트폰 앱 확산



게임 등급분류 기준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물등급위원회
4세 이상 (4+)	전체이용가	전체이용가
9세 이상 (9+)	콘텐츠 수위 - 하	12세 이용가
12세 이상 (12+)	콘텐츠 수위 - 중	15세 이용가
17세 이상 (17+)	콘텐츠 수위 - 상	청소년이용불가

학생문화:

청소년 유해방송 노출

청소녀유해언어 UV신드롬 비긴즈 과징금 2천만원
중징계

2011-07-08 09:4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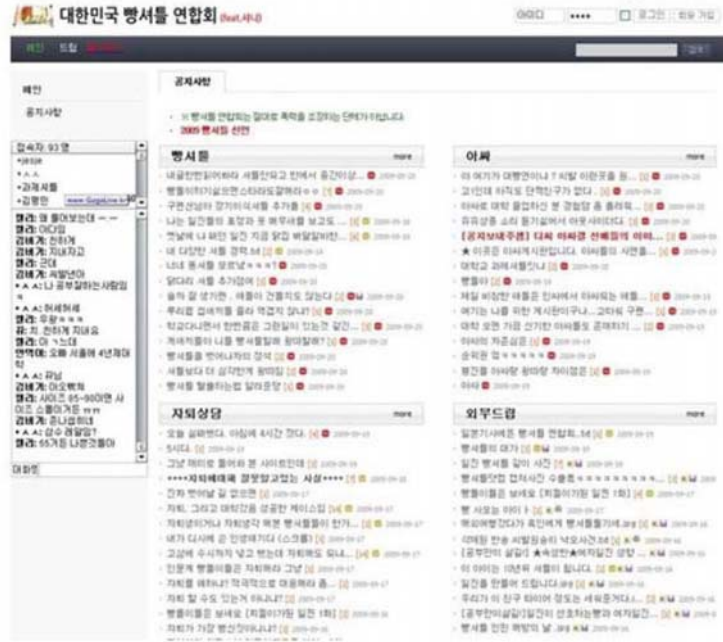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7일 3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제재수위인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프로그램은 Mnet 'UV신드롬 비긴즈', 서울**신문** STV '쇼킹한 걸', Ystar '특종헌터스' 등이다. 'UV신드롬 비긴즈'는 과징금 2,000만원, '쇼킹한 걸'과 '특종헌터스'는 각각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학생문화:

네트워크화된 청소년 조직



학교폭력 정책차원의 접근방안 (WHO, 2002, "Violence and Health")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 의견수렴
 - 관련단체, 각 기관과 협의
 - 기존 법안 및 정책 검토, 현황자료 수집, 가해/피해 실태 파악, 전담기관 설립
2.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3. 학교폭력 예방 우선순위 설정
4. 학교폭력 국가차원 전략 수립
 - 전체 학교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예방, 발생후 조치 등)
5. 학교폭력 예방 언론캠페인 확대
6.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교사양성 및 현직교육과 연계
7. 교육계 전반의 자문위원회 구성
8. 국제 학교폭력 연구 네트워크 구성
9. 학교폭력 관련 효율적인 대처 법률 추진

학교폭력, 왕따 피해유형 (Olweus, 1993)

Olweus' Typology of Bullying

In his seminal book on bullying, Olweus identifies key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ho are more likely to be either bullies and victims in the school environment. According to Olweus, potential bullies exhibit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 Possess a strong need to dominate others and get their 'own way'
- Display acts of impulsive behavior and are easily angered
- Are defiant in character and often act aggressively toward authorities/adults - including parents and teachers
- Tend to show little empathy toward the students who are being victimised
- Male bullies tend to be physically stronger than their peer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actual and potential victims tend to fit into a different category:

- They display signs of caution, sensitivity and are often quiet, withdrawn and shy
- Are often anxious, insecure, unhappy and have low self-esteem
- Suffer from depressive feelings and may engage in suicidal ideation more frequently than their peers
- They seldom have a single good friend and relate better to adults than to peers
- If they are male victims, they may be physically weaker than their peers

Lastly there is a smaller group referred to as the provocative victims or the bully-victims whose characteristics include:

- Frequent reading and writing problems
- Often they display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characteristics
- They often elicit negative reactions from peers
- They may be disliked by teachers

It is however very important to consider the roles of all students in the classroom, as Olweus' 'Bullying Circle' highlights by mapping out the roles and reactions of students in an acute bullying situation.

Source: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1993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 (외국사례)

Type of intervention	Country (number of studies)	Summary of results
Curriculum interventions (ranging from videotape plus discussion, to 15-week course)	10 studies: Belgium (1), Czechoslovakia (1), Italy (1), UK (4), US (3)	• Only 4/10 studies showed decreased bullying. • 3 of those 4 also showed no improvement or worsening in some populations (e.g. younger children, aggressive children). • Only one unequivocal success, but this only for indirect outcome of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bullying.
Multi-disciplinary/'whole school' interventions (includes some combination of school-wide rules and sanctions, teacher training, classroom curriculum, conflict resolution training, individual counselling.)	10 studies: Australia (1), Canada (1), Italy (1), Norway (2), Switzerland (1), US (4)	• 7/10 revealed decreased bullying, with younger children having fewer positive effects. ★ Two studies evaluated the <i>Olweus BPP</i> in Norway: the original Olweus (1994) study showed large improvements, while Roland (2000) showed large increases in bullying and victimization, although schools that implemented programmes did display evidence of having responded well to the programme.
Social and behavioural skills group training interventions (including peer mediation training, targeting bullies and/or victims)	4 studies: South Africa (1), UK (1), US (2)	• 3/4 showed no clear bullying reduction. • The one study showing positive outcomes involved younger children considered aggressive.
Other interventions (increased social workers, mentoring)	2 studies: UK (1), US (1)	• The mentoring study found decreased bullying and risk of depression for mentored 'at-risk' children. • The study of increased school social workers found decreased bullying among primary school students, and increased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but decreased truancy, theft, and drug use among both.

Source: Adapted from Vreeman and Carroll, 2007.

학교폭력 예방대책 사례(미국)

Promising Programs Identified by Blueprints for Violence Prevention

Baltimore Mastery Learning (ML) and Good Behavior Game (GBG)

CASASTART (Striving Together To Achieve Rewarding Tomorrows, from the National Center on Addiction and Substance Abuse)

FAST (Families and Schools Together) Track

I Can Problem Solve

Intensive Protective Supervision Project (IPSP)

LIFT (Linking the Interests of Families and Teachers)

Parent Child Development Center

Perry Preschool Program

Preparing for the Drug-Free Years

Preventive Intervention

Preventive Treatment Program

Project Northland

Project PATHE (Positive Action Through Holistic Education)

Project STATUS (Student Training Through Urban Strategies)

School Transitional Environmental Program (STEP)

Seattle Social Development Project

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

Syracuse Family Development Research Program (FDRP)

Yale Child Welfare Project

Center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Violence
A Research Center within the 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

Model Programs

The following Blueprints Model Programs were selected from a review of over 900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Blueprints programs establishes a very high standard - one that proved difficult to meet. We provide a brief summary, program background, a video segment describing each program, and contact information.

Number	Program Title
BP-001	Midwestern Prevention Project (MPP)
BP-002	Big Brothers Big Sisters of America (BBBS)
BP-003	Functional Family Therapy (FFT)
BP-005	Life Skills Training (LST)
BP-006	Multisystemic Therapy (MST)
BP-007	Nurse-Family Partnership (NFP)
BP-008	Multidimensional Treatment Foster Care (MTFC)
BP-009	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 (BPP)
BP-010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PATHS)
BP-011	The Incredible Years: Parent, Teacher and Child Training Series (IYS)
BP-012	Project Towards No Drug Abuse (Project TND)

BLUEPRINTS FOR VIOLENCE PREVENTION

Center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Violence,
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483 UCB
Boulder, CO 80309
(303) 492-1032
(303) 492-2151 Fax
Email: Blueprints@colorado.edu

학교폭력 대책, 집중적 논의

Educational Researcher

Volume 39, Number 1 January/February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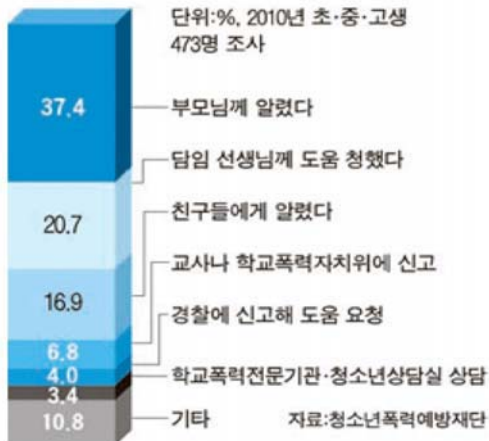
Special Issue: New Perspectives on School Safety and Violence Prevention

Guest Editors' Preface	5
Matthew J. Mayer and Dewey G. Cornell	
Why Do School Order and Safety Matter?	7
Dewey G. Cornell and Matthew J. Mayer	
How Safe Are Our Schools?	16
Matthew J. Mayer and Michael J. Furlong	
What Can Be Done About School Shootings? A Review of the Evidence	27
Randy Borum, Dewey G. Cornell, William Modzeleski, and Shane R. Jimerson	
What Can Be Done About School Bullying? Linking Research to Educational Practice	38
Susan M. Swearer, Dorothy L. Espelage, Tracy Vaillancourt, and Shelley Hymel	
How Can We Improve School Discipline?	48
David Osher, George G. Bear, Jeffrey R. Sprague, and Walter Doyle	
The Achievement Gap and the Discipline Gap: Two Sides of the Same Coin?	59
Anne Gregory, Russell J. Skiba, and Pedro A. Noguera	
How Can We Improve School Safety Research?	69
Ron Avi Astor, Nancy Guerra, and Richard Van A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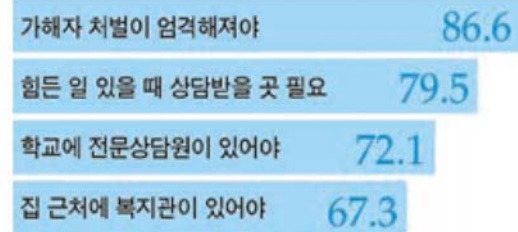
학교폭력 예방, 현실적 대안은?

학교폭력 피해 시 가장 도움이 컸던 방법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위:%, 2010년 초 5~고 2 1015명 조사(중복응답)



자료:여성가족부·연세대 김재업 교수팀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 원칙

- **신뢰가는 정책 추진**
 - 일회성 정책, 보여주기식 정책 배제
 - 이번에는 바뀔 꺼라는 신뢰확보 필요
- **지속적인 정책 추진**
 - 정책 검증이 철저하게 진행되는 성과기반 정책 추진 필요
 - 1, 2년의 점검이 아닌 5, 10년 지속적 점검
- **특정 기관만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 추진**
 - 교사, 학교만의 책임이 아닌 모든 기관의 공동 협력해야만 학교폭력 예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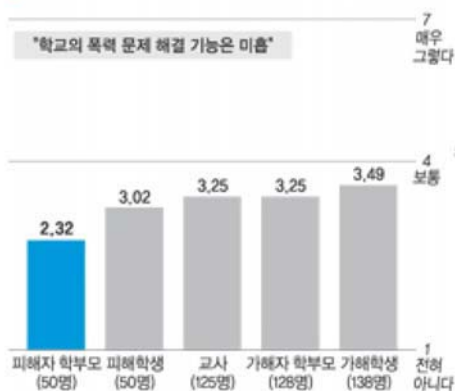
학교폭력 예방대책: 학교 대응력 향상 필요

- 한 중학교 교사는 "정식으로 자치위를 열면 교육청에서 학교 평가 때 점수를 깎는다", "현장에서는 담임 교사가 훈계하거나 봉사활동을 시키는 정도에 머문다"
- 한 자치위원은 "자치위에는 경찰·변호사 대신 부인들이 대리 참석하더라"
- 한 자치위원은 "자치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면 교장의 거수기 역할 외엔 기대할 게 없다"
- 한 피해 학부모는 "징계는 교장 재량이고 소송 중이라 징계할 수 없다", "진정하면 괜히 학교만 시끄러워진다고 말했다"
- 한 교장은 "학교폭력 공개로 학교 명예가 훼손된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학교 대응력 향상 필요

- 학교 대응력 미흡 -> 가해/피해자 모두 불만족
- 학교 해결기능 보통 이하, 불만확대(2006 조사)

■ 폭력발생시 학교의 위기개입 능력은 충분한가



■ 학교폭력 처리방식에 대한 피해자 및 가해자 반응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교폭력 예방대책: 학교 대응력 향상 필요

- 예방대책 핵심 -> 학교 책임
- 교사, 학교장 책임 강화 필요
 - 학생은 대부분 학교에서 생활
 - 대부분의 학교폭력 학교에서 발생
 - 학교의 책임회피 = 결국 학교폭력 무방비
 - 학교폭력 은폐, 축소 -> 교원 징계 등 강제
 - 결국 철저한 학교폭력 처리 통한 예방 효과 증대

학교폭력 예방대책: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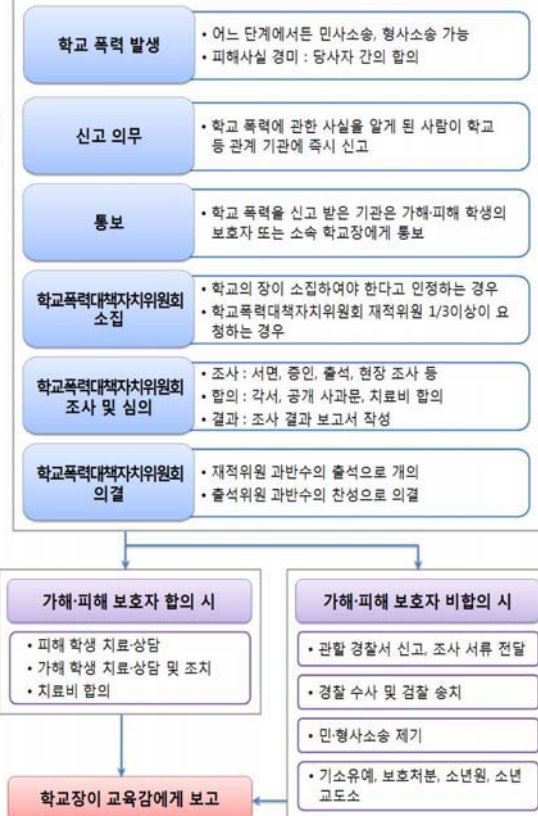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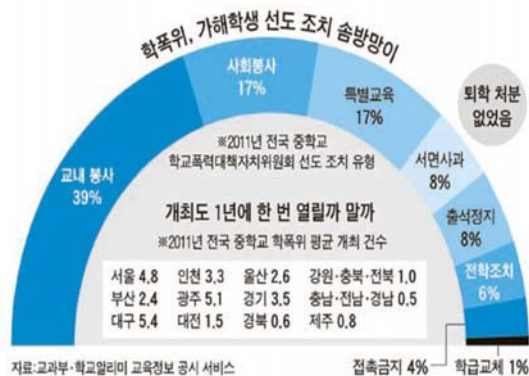
- 학교폭력 예방 = 상담교사 확대가 기본
 - 기존교사인 경우 폭력 예방/사후대책 처리 미흡
 - 최소 중, 고교 한 학교당 한명 배치 필요
 - 지역별 거점학교에 경험이 많은 핵심 전문상담교사 네트워크 마련
-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201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계
학교 수	5854	3130	2253	178	11,415
전문상담교사 수	2	199	375	307	883

학교폭력 예방대책: 학교폭력 법률 운영 및 정비 필요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운영은?
 - 폭력 관련 사안 모두 위원회 심의 통과, 위원참여 적극성은?
 - 학교장은 교육감에 학교폭력 방생 사실 및 결과처리 보고, 미온적?
- 학교 책임부과 명시 및 불이행시 강제규정 추가
- 학교폭력시 형사처벌 대상 연령 인하 필요
 - 만 14세 이상에서 만12세 이상으로

학교폭력 학교폭력 법률 운



학교폭력 예방대책: 실태조사 필요하나 방식 개선 필요

- 실태조사 필요
 - 전국 초등 4학년 ~ 고교 3학년 558만명 대상의 대규모 조사 2월달 실시
 - 그러나 전통적인 우편설문조사 방식의 효과성 의문
 - 실제 우편료만 15억원 소요 예상
-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는 NEIS와 연계 필요
 - 세부 실질적인 온라인 설문이 더 효과적
 - 불필요한 우편료 등 실비로 학교지원 및 상담교사 확대가 더 바람직함

학교폭력 예방대책: 학생부 기록 적합성 여부

- 학생부에 학교폭력관련 사항 제시
 - 경고나 훈육적 차원에서 필요함
 - 하지만 이런 것이 교육적인지는 재고 필요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예시

2012년 2월16일	OO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12년 3월 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12년 6월20일 전출)
2012년 6월21일	△△중학교 제1학년 전입학

특기사항 2012.6.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8호에 따른 전학

- 실효성 차원에서 반영될 가능성
 - 새로운 법률적 분
 - 폭력행사후 교정·마련 필요등 새로
 - 초·중고 기간에만 삭제가 바람직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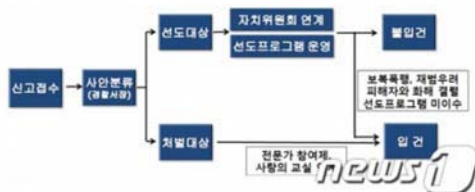
학년	수업 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질 병	무 단	기 타	질 병	무 단	기 타	질 병	무 단	기 타	질 병	무 단	기 타	
1														개근
2		13			1									다리수술(10일), 감기(3일)
3			5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6호에 따른 출석정지(5일)

학교폭력 예방대책: 가해자 2차 가해 예방 추진

- 가해학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 프로그램 실시
 - 가해자는 폭력 경중에 따라 강제 전학, 퇴학 추진
 - 가해 학생만이 아니 부모도 동반교육 의무 참여
- 가해학생의 전학/퇴학시 좀더 세밀한 고려
 - 근거리 학교로 전학보다 관리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학교로 전학 실시
 - 2차 가해 예방 프로그램 집중 교육 실시 및 상담교사, 담당 의사 등 종합적 관리 필요

학교폭력 예방대책: 엄정한 학교폭력 처리 필요

- 학교폭력발생시 경찰의 개입 필요
 - 과도한 개입인 경우 학교와 마찰 가능성 상존
 -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차원의 접근 필요
- 과연 경찰이 117 신고전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력이 있나? 일반적불신해소 필요



학교폭력 예방대책: 검증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확산

-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 외국에서는 예방 프로그램 상시 평가 및 활용

하지만 검증장

방법

방법	대상	금액
자료제공/집단활동	학생, 교사, 학부모	70,000원/회기
상자료	학생, 교사, 학부모	100,000원/회기
상자료	학생, 교사, 학부모	100,000원/회기
모둠활동 등 특별 교육 이수율	특별교육 대상 학생	50,000원/회기

본 근거에 따른 유료강의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
신뢰가는 종합적, 지속적, 장기적인 대책 !!





학교폭력,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유 석 재(조선일보 사회정책부 기자)

들어가며

2012년 2월 1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은 대단히 무거운 분위기였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학교폭력 피해, 가해 학생들과 면담을 가진 이 자리에서 폭력 피해를 당한 한 고3 남학생은 매우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를 때리고, 따돌리고, 내 물건을 훔치고, 인터넷에 악플을 달던 아이들이 정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교내봉사 7일’ ‘특별교육 이수 7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성찰교실에 앉아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폭력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학교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5학년 때 왕따(집단 괴롭힘)를 당했다.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여러 명으로부터) 맞았다. 같은 반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에게 30분

전에 말했는데 선생님은 도와주지 않았고 지나가던 아저씨가 구해줬다.” 이 학생은 이런 말도 했다. “선생님이 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이걸 신고해도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왕따를 당한 어린이가 학교에 말하면 가해 학생과는 떨어뜨려 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말을 경청한 장관은 “할 말이 없네요, 제가”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MB 정부에서 사교육 대책은 많이 진전이 있었지만 인성교육만큼은 현장에 크게 침투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성교육’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적 중심의 학교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는 전교조의 주장(1월 4일)과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정책’으로만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적어도 2012년 1월까지의 피해를 당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중고 ‘왕따 피해 학생’이 전국 30만명으로 추산되고 (조선일보 2011년 12월 28일), 이 중 34%가 초등학교에서 이뤄지는 학교 폭력의 일상화, 저연령화 현상 속에서 교육당국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문제는 ‘인성교육’이나 ‘학교 문화 혁신’처럼 몇 년 후에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나, ‘상담교사 수’나 ‘상담건수’ ‘심의건수’ 같은 수치적 성과가 아니라 피해 학생들이 당장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를 취재하면서 깨닫게 된 점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①피해자와 가해자 격리를 통한 일차적 차단 ②폭력 재발을 막는 실질적인 제재 ③학교와 함께 외부 기관이 폭력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이중(二重)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모든 것을 정책 입안자가 아니라 피해 학생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 신고 즉시 ‘격리와 차단’을

현재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겐 전학, 10일 이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특별 교육,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고등학생은 법적으로는 퇴학도 가능하지만, 퇴학은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상태다. 2010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의 68%를 차지했던 중학교는 현재 ‘왕따 폭력의 온상’이라 불리는 곳이지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퇴학이 불가능하다. 2012년 1월 현재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끝까지 전학을 거부하면 학교에선 강제로 전학 보낼 수도 없게 돼 있다.

오히려 피해 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전학을 가는 일이 많다. 보통 ‘왕따’ 사건 피해자는 1명이지만 가해자는 여러 명일 때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가해자보다 피해자 1명이 전학 가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폭력의 가해자는 버젓이 남고 피해자가 ‘추방’을 당하는 매우 이상한 일이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벌어져 왔던 것이다.

전학을 가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가해 학생이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대부분 같은 학군 내에 있는 학교로 재배치되기 때문에 인근 학교의 피해 학생을 찾아가 또다시 협박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생겨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장은 다른 학교장에게 가해 학생을 받아달라고 요청해 수락을 받는 방식으로 전학을 시켰다.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요청해 관할 자치구 안에서 임의로 배정할 수도 있지만, 일부 성범죄 등을 제외하면 다른 자치구로 전학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내기는 대단히 어렵다. 부산의 학부모 박모(46)씨의 사례를 보자. 박씨는 최근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됐다. 딸은 “엄마한테 말하면 애들이 영원히 ‘(왕)따’시킨다고 했다”며 펄펄 울었다.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개네한테 반성문을 쓰라고 하면, 또 나를 고자질쟁이라고 욕하고 다른 친구들마저 나랑 놀아주지 않을 것 같았다”고 했다. 박씨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면 애들은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죄책감을 느껴 부모한테도 말하길 꺼려한다”며 “부모가 이 정도니 낯선 상담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학생들은 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둘째, 좀처럼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도움 요청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교과부나 교육청,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의 입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시각’에서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피해를 당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도움 요청할 수단이 무엇인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어디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피해 학생들이 즉각적인 도움을 호소하는 ‘SOS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없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 ‘즉각적인 조치’에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신고한 학생’과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을 격리하는 조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피해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여기서 “양쪽에게 다 잘못이 있으니 터놓고 이야기해 보자”거나 “친구가 장난을 친 것인데 오해한 게 아니냐” “아이들이 크면서 좀 싸울 수도 있지” 등의 온정주의나 선입견은 배제해야 한다. 지금껏 학교폭력은 그런 온정주의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 왔던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대질시키는 것 역시 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가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11년 1학기,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A(14)양의

어머니는 딸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학교장을 찾아가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다음날 등굣길에 한 교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한 명을 붙잡고 “네가 A를 괴롭혔니?”라고 물었다. 이후 그 학생은 교실에서 A양을 ‘고자질쟁이’라고 욕하며 더 심하게 괴롭혔다는 것이다. 3개월 뒤 딸의 팔뚝에 멍이 든 것을 본 A양의 어머니는 교사에게 전화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후 학교로부터 조사 결과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A양은 “계속 보복 폭행을 당했다”며 “다시는 학교에 찾아오거나 선생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빌었다. 2011년 11월 18일 밤에 A양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A양이 남긴 유서에는 “내 편은 없다. 내가 죽으면 다 끝이다”는 말과 함께 자신을 괴롭혔다는 학생 5~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중학교 교장은 “애들끼리 말다툼하는 수준이었을 뿐 집단으로 따돌리고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양의 어머니는 “괴롭힌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엉망으로 대처해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학교측이 ‘즉각 격리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했더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었다.

그렇다면 즉각적인 대응과 신중한 조사 뒤에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은 반드시 필요하며, 의무적으로 다른 자치구로 전학 가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올해 초 광노현 교육감 복귀 이전의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았던 ‘가해학생 대안 학교’는 이 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학우를 괴롭히는 학생을 대안학교로 진학시켜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2013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부터 대안학교 도입을 우선 시행한 뒤,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선 “그야말로

‘선수’들이 모인 상황에서 폭력과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그 같은 시각은 이런 대안학교가 피해 학생들을 일차적으로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구상됐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 ‘폭력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앞서 언급한 교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 학생은 이렇게 항변했다. “왜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들이 계속 그런 폭력을 반복하는 줄 아세요? 처벌이라고 받아 봐야 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는 걸 다 알아서 그래요. 그런데 학생들이라고 해서 폭력이라는 위법행위를 했는데 처벌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건가요?”

맞는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고, 폭력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데, 학교와 사회에서는 사실상의 ‘처벌’도 ‘징계’도 없다. 교육 당국은 모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직 ‘가해 학생의 인권’만 존중될 뿐이다.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별다른 처벌과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피해를 당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가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커다란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비교육적인 상황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교과부 학교문화과의 자료를 보면, 2010년 전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 수는 19,949명이었다. 이들에 대해 내려진 ‘선도조치’를 보면, 교내봉사가 7,211명, 사회봉사가 3,488명, 특별교육이 3,437명, 서면사과가 1,849명이었다. 학생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숨방망이 처벌’이 실제로 전체의 80%를 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를 휴학 중인 B(14)양은 2010년 같은 반 학생 1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친구들은 “재수 없어” “죽어버려” “더럽다”며

욕하고, 손이나 슬리퍼로 때렸다. B양이 먹는 밥 위에 침을 뱉기도 했다. 이런 집단 따돌림과 폭력이 8개월간 계속되자, B양은 점점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일이 잦았다. 2010년 11월 B양은 화장실에서 집단 구타를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에게 학교에서 내린 처벌이라곤 화장실 청소 같은 '교내 봉사' 수준에 그쳤다. B양 어머니는 "내 자식은 가해 학생들한테 보복당할까 봐 학교에도 못 가고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내 애를 괴롭힌 학생들은 버젓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결국 '폭력은 범죄'라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만이라도 잠정적인 법가적(法家的) 조치가 절실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잘못된 경중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가해학생 대안학교'나 출석정지, 유급, 퇴학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게 보복했을 때는 처벌에 가중치를 뒤야 한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가해 학생의 폭력 사항을 누적 기록하고, 고교 입시와 대학 입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가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폭력은 범죄' '폭력은 망하는 길'이며 '폭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조치들의 목적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기보다는 학교폭력의 예방에 있는 것이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많은 일선 교사들은 "가해 학생 부모를 학교로 부르면 부모의 행동이 학생과 유사해서 놀랄 때가 많다"고 말한다. 상당수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비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부모들의 태도가 가해 학생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못 느끼게 하고 '왕따 현상'을 확대 재생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가 하는 것은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정도다. 미국에선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힌 경우 부모를 소환한다. 소환 통보 전화를 받은 학부모는 즉시 학교로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며, 직장 업무 등의 사유로 소환에 불응하면 부모로서 책임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영국에는 학칙을 통해 문제 학생의 부모를 함께 불러 교육하는 ‘자녀 동반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이처럼 우리도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 가정교육을 맡은 부모에게도 부분적인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교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교폭력을 몰랐거나 알고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교원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강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교장이나 교감 승진에 학교폭력 문제를 반영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일각에선 “학교폭력 대응을 소홀히 한 것이 3번 이상 적발될 경우엔 수업에서 제외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특별 연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성과급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이렇게 교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생활지도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노르웨이에서는 1970년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후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서클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교사들이 평소에 학교 폭력 대처법을 숙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3. 학교와 외부기관의 이중 시스템 구축

올해 초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117’로 통일하기 전까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 상담 전화’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었다. 한 신문사 취재팀이 ‘전학 이후 왕따로 괴로워하는 고교생’이란 상황을 설정한 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상담전문 전화인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친절하 목소리로 “학생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가족과 담임선생님에게 알리세요” “자살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면 힘이 될 겁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들려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해 주지 않았다.

교과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각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긴급전화(1588-7179)’를 크게 홍보했다. 학교폭력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다. 여기에 신고하면 Wee센터는 해당 학교에 연락을 취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학교가 아니라 긴급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이라면 이미 학교에선 폭력 사건에 대해 쉬쉬하느라고 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는데, Wee센터가 다시 학교에 연락을 취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면상담을 요청해도 2주에서 3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은 왕따를 당하는 학생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의 시간’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개별 학교가 가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 기관이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중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폭력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객관적인 조사에 참여해 학교가 폭력 사건을 은폐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여전히 학부모가 만족스러워할 수준은 되지 못한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역시 피해 학부모들의 강한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계 이외의 관계자’인 법조인이나 심리, 상담 전문가 등을 반드시 조사에 참여시키도록 법제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를 포함한 교육계 전체가 얼마나 학부모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물론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학교도 많지만,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것은 항상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과의 친밀도를 높이려는 학교 전체의 분위기와 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지와 분위기가 없다면 아무리 상담 교사가 많더라도 학교폭력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오며

지난해 12월 말 왕따 폭력에 시달리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이후, 학교폭력 문제는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며 신문지상의 주요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한 교대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제안하거나 내놓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학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왕따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대답은 명쾌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2005년 중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홍권식 학교폭력 사망자진실규명위원회 위원장은 “교사들이 승진에만 관심이 있고 제대로 학생을 지도하지 않는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왕따 피해 학생 30만명은 절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교사들 사이에 소위 ‘3불(不) 원칙’이란 게 있는데, 학생들이 싸우는 현장을 봐도 못 본 척 하고, 왕따 얘기를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알아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무턱대고 교사와 학교만 탓할 수도 없다. 학생들을 징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줄어들었고,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많은 교장들이 우려하는 현실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지 자체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폭력은 있는데 처벌은 없는’ 현실에서는 피해 학생들만 2중, 3중의 고통을 당할 뿐이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모두 교육적으로 대단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뿐이다. 학교폭력은 결코 ‘자라나는 아이들이 늘상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범죄’라는 점을 학교와 부모, 사회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보도자료에 성과를 나열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예방은 앞으로도 계속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학교폭력(따돌림) 예방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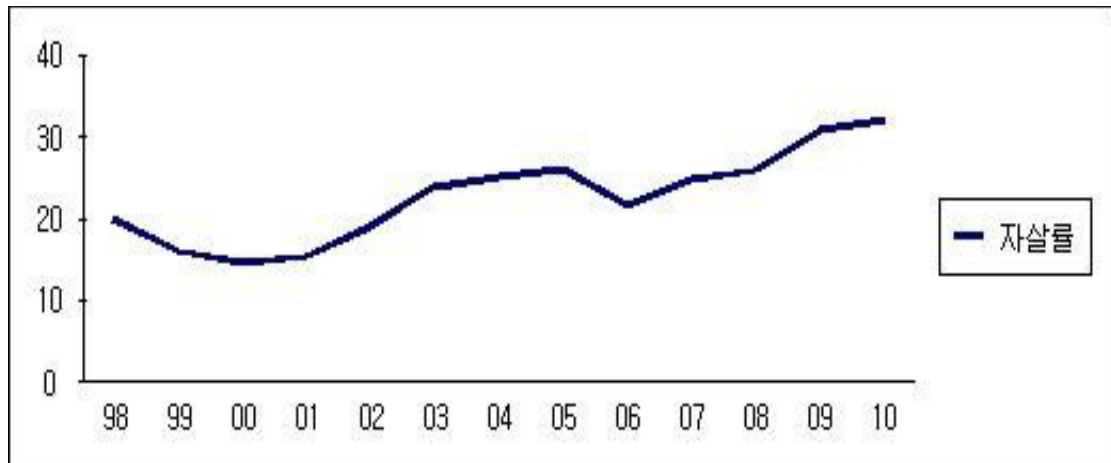
송 형 호 (면목고등학교 생활상담부장)

1. 문제행동의 원인

서울교육문화회관에 생활지도부장 협의회를 다녀왔어요. 강지원변호사의 간단한 특강이 있었어요. 강변호사는 소년담당검사를 거쳐 부장검사로 소년원장에 이어 청소년보호위원장까지 지낸 분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청소년비행 최고 전문가시지요. 이분이 우리 사회 범죄의 궁극적 원인을 상처(trauma)로 보고 계셔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것이 화(anger)로 표출되어 공격성(aggression)으로 나타나는데 외부로 향하게 되면 폭력, 절도 등의 범죄가 되고 이를 “넘어서” 자기 안으로 향하게 되면 자살이 된다고 설명하시더군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자살방지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고요. 그런데 치료의 해법을 말씀하시면서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더군요. 한 아이가 조사를 받는 도중 엉엉 울더라고요. 당황해서 “내가 너를 나무라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했더니 “아니예요. 검사님처럼 제 말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그동안 한 명도 없어서---,”라며 말을 잇지 못 하더라고요.

1) 더 이상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생기는 방어기제

우울 등으로 인한 자존감의 약화-> 화(anger)로 드러남-> 외부로 폭발하면 폭력, 안으로 향하면 자살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자살률	19.9	16.1	14.6	15.5	19.1	24.0	25.2	26.1	21.8	24.8	26.0	31.0	32.1	?	?

2) 상처의 외적 표현 - Cooperatvie discipline (Linda Albert)

- (1) 관심 끌기(attention) : ADHD 대표적
- (2) 앙갚음(revenge)
- (3) 힘의 행사(power) : 일진(gang) - 자신들만의 인정 시스템
- (4) 실패의 회피(avoidance of failure)

폭력의 원인 : 2), 3)

2. 대책

엄정하고 일관된 절차, 절차에 대한 귀 따가울 정도의 안내, 징계가 이루어지면 성찰이 일어나도록 집중, 징계라는 생각보다 교육받고 관심 받는다는 느낌의 선도, 학교가 학생의 의견이나 가치가 반영되도록 자치적 마당을 열어주는 문화적 훈풍, 위기학생들은 특별히 상담이나 복지차원의 돌봄을 받는다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1) 모두가 성취(Everyone successful!)하는 학교

- (1)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 (2) 협동 프로젝트 수행평가
- (3) 학습스타일과 다중지능 기반의 수업 방법 개발
- (4) 예체능활동 활성화: 표현의 기회, 분노(스트레스) 조절
 - ① 방과후 학교에 예체능, 특기과정 30 % 이상 의무화
 - ② 예체능동아리 3실 이상 확보
 - ③ 방음장치된 예체능 합동 연습실 확보: 음악 및 헬스, 풍물, 난타 장비 지원 - 교육과정보다 놀이로써의 활동 장려
 - ④ 체육 활동 지원: 체육 수업 시수 확보
 - ⑤ 창체시간에 스트레스 조절할 수 있는 난타, 풍물 등 강사 지원(강사풀에 포함)

2) 참여와 소통의 학급, 학교운영

- (1) 1인 1역을 통한 기여의 통로 마련 <http://cafe.naver.com/ket21/1547>
- (2) 휴대폰 문자를 통한 상담 지원(교사 문자 사용 활성화, 스마트폰을 활용한 채팅)
- (3) 학급의 놀이문화 지원: 학급을 공동체 체험의 장으로
 - ① 학급별 운동기구(농구공, 축구공), 놀이기구(오목판, 보드게임 등) 지원
 - ② 학급단위 재능봉사, 학급단위 소품, 봉사활동 등 장려
- (4) 위기학생 지원 멘토링 운영
 - ① 교내: 교사 학생간, 학생간, 선후배간 <http://cafe.naver.com/ket21/1545>
 - ② 교외: 로스쿨 대학원 학생들과 사법연수생과 보호처분 학생과의 멘토링 제도 운영하고 소년원동행방문 포함 월 1회 멘토링 필수과정 운영
 - 한산미래 대안학교 박정일 선생님 의견

(해설) 자양고에서 ADHD와 우울증의 위기학생들 1인당 3만원씩 지원하고 교사와 멘토링제도 운영했는데 내가 멘토링한 두 명 중 39명 중 하던 학생이 각에 ㅅ대 영문과 가고 38등 하던 애 ㄱ대 컴퓨터공학과 진학한 사례 있음.
- (5) 청소년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노력

청소년의 발달심리와 위기행동의 배경이 되는 게임중독, ADHD, 우울증에 대한 이해, 감정코칭, 대화(소통)법연수가 청소년 관련 업무종사자 모두에게 의무화되었으면 합니다.

 - ① 교육계 종사자

2012년: 모든 학교 1명 이상 연수요원 교육

2013년: 모든 교원 연수 -> 2014년: 학생 감정 코칭 교육

② 교외

청소년범죄가 처벌이 아닌 선도 위주로 가야한다면 청소년 담당 경찰
검사 판사는 연 60시간 이상 상담 교육, 비폭력대화법 연수를 의무화
할 것

③ 위기학생 부모자녀간 소통법 연수 지원: 위기학생 부모자녀 동반 캠프 운영 등

2012년: 연 4회 이상 연수비 지원

2013년: 부모 감성코칭연수: EBS 활용

(2012년 교원 감성코칭 연수단이 운영)

2014년: 학생 감성 코칭 프로그램 시작

(6)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코칭용 동영상 자료 조사 및 학습지 개발 보급 <http://cafe.naver.com/ket21/143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대한 이유를 분석
한 결과, '오해와 갈등'(12.2%)이 3위를 차지한다.

① 이의 예방을 위해 사회적 기술 학습지와 동영상 감성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The screenshot shows a Naver Cafe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초대' (Invite) and '채팅하기' (Chat). Below it is a '카페 글쓰기' (Write for Cafe) button. The left sidebar, titled '★ 즐겨찾는 게시판' (★ Favorite Board), lists various categories, with '-사회적기술교재' (Social Skills Materials) highlighted in a red box.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list of posts under the title '문제행동 예방과 증재전략: 위기학생 지원'. The posts are numbered and include titles such as '[사회적 기술] 장점 찾기의 기술', '[사회적 기술] 나의 행복지수는?', '[사회적 기술] 자살 바라보기', '[사회적 기술] 야유와 격려의 차이', '[사회적 기술] 교발과 고자질의 차이', '[사회적 기술] 분노를 표현하는 기술', '[사회적 기술] 자신의 분노를 다루는 기술', '[사회적 기술] 남을 설득하는 기술', '[사회적 기술] 따돌림을 다루는 기술', '[사회적 기술] 불편한 말을 받아들이는 기술', '[사회적 기술] 인정의 기술', '[사회적 기술] 어려움을 바라보는 기술', '[사회적 기술] 도움주기의 기술', and '[사회적 기술] 겸손의 기술'. The bottom of the page shows a pagination bar with the numbers 1, 2, 3, 4.

② 영상 활용 감성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감성 교육(홍영미 외, 부제-영상물을 활용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2010) 연구에 따르면, 감성교육용 영상물 시청과 시청 후 성찰의 글쓰기 및 대화의 과정을 통하여 감성교육, 사회적 감성교육을 실시한 연구이다. 감성교육의 결과는 매우 획기적이다. 특히 연구목적이 학교폭력예방이었으므로 예방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 감성교육 이후에 나타난 징계 및 부적응 현황

	영상물 시청 없음 (1반, 6반)	영상물만 감상 (2반, 3반)	영상물 감상 + 소감문 (4반, 5반)
단순 교칙 위반 (흡연 등)	11 건	2 건	2 건
교내 징계 (교내봉사, 등교정지 등)	137 건	27 건	2 건
학교생활 부적응 (자퇴)	4 건	2 건	0 건
총계	152 건	31 건	4 건

감성교육 이후에 나타난 교칙 위반 및 징계에 대한 학기별 비교

	학기	영상물 시청 없음 1반 + 6반	영상물만 감상 2반 + 3반	영상물 감상 + 소감문 4반 + 5반
교칙 위반 및 교내 징계	1학기	47 + 27 = 74 건	17 + 7 = 24 건	2 + 0 = 2 건
	2학기	48 + 26 = 74 건	5 + 0 = 5 건	0 + 0 = 0 건
감소		변동 없음	12 + 7 = 19건 감소	2 + 0 = 2건 감소
총계		148 건	29 건	2 건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1차 예방교육과 2차 예방교육(방관자 교육)으로 영역을 나누고, 각각 영상물 시청과 소감문 쓰기 및 관련된 대화 나누기 등을 동시에 실시한 그룹, 영상물 시청만 실시한 그룹, 아무 것도 실시하지 않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의 학교폭력예방 효과를 보면, 감성교육이 학교 교칙 위반 및 징계 건수를 큰 폭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1년 간의 연구의 성과를 보면, 첫째, 영상물만 시청해도 교칙 위반 및 폭력과 같은 문제로 인한 징계 건수를 줄일 수 있다. 영상물 미시청 반과 영상물 시청 반의 총 징계 건수 차이는 148건 대 29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성교육의 효과는 다양한 사실을 말해 준다. 시청각 자료의 효과와 더불어 성찰적인 글쓰기와 공감적인 이야기 나눔의 효과가 더해진다면 위기 학생들의 자각과 변화를 촉진하고 올바른 감성의 발현에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시청각 자료가 아닌 사회적기술 학습지를 통한 사회적기술 교육도 읽기와 성찰적 글쓰기 및 나눔의 과정이 어우러지면 자각과 변화의 계기를 촉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① 교내

2012년 : 담임 조회시간 또는 창체 기반

2013년 : 전교과 기반

2014년 :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사회적 기술, 사회적 공감 반영

② 교외

평화교육,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사회적 감정 학습(Social emotion learning) 등을 보호처분과 소년원 교육과정에 반드시 넣도록 하자.

3) 결과안내중심 훈육

이는 영미식 훈육방식이다. 생활지도부나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학생들을 위하여 유용하고,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신뢰가 형성되고, 훈육이나 생활교육 과정에서 감정을 상하지 않으면, 수많은 게시자료들이 의미 있게 읽힌다. 이러한 지속적이고도 친절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생은 스스로 위반 행위로 인한 자기 손해나 불이익, 귀찮음, 학업상의 손실 등을 인정하고 책임지게 되었다. 다양한 수단으로 학생들의 행위의 결과가 자신의 미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다. 징계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안내이다. 징계 결과를 모든 교실에 B4로 부착하고 출입구와 복도 게시판 세 곳에는 대자보로 게시한다.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 결과 안내

행위에 대한 자연적 결과와 논리적 결과 게시하기

교실 게시물

선도 결과를 공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에 따라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

제7조(학칙사항) ③ '특기사항'란에는 학칙면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해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사유가 기재됩니다.)

제8조(출결사항) ④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하급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해설: 학폭 피해학생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무단결석 처분된 사유가 기재됩니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④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해설: 학폭 피해학생이 처분 받은 일체의 내용이 기재 가능합니다.)

행동발달및종합의견란 입력(예시)

2012년 0월 00일 제0차 면목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에서 동료 학생에 대한 상습적 폭행 및 금품갈취로 다음과 같이 처분함.

(1) 000 : 사회봉사 5일을 명하고, 피해자 부모님과 특수 반 담당교사께 진정한 사과의 편지를 쓸 것을 명함.

(2) 000 : 출석정지 10일을 명함.

(3) 000 : 사회봉사 5일을 명하고 부모님과 하루라도 함께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함.

꿈을 키우는 면목고 생활지도부

일시: 10월 13일 (목)

학년	사유	징계 결과
2	지속적 수업 방해 및 교사 지도 거부 2명	상당 2회와 특별교육 5일
2	지속적 수업 방해 및 교사 지도 거부+ 기존 징계	상당2회와 출석정지 7일
1	출연 3차	특별교육 5일
1	무단결석20일이상	사회봉사 3일
	무단결석20일이상+기존 징계 2명	출석정지 3일
2	출연 3차 2명	특별교육 5일
2	출연 4차 1명	출석정지 7일

(해설: 규정상 교사지시불이행 등 수업방해의 경우 퇴학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출석정지시 무단결석 처리되어 직업반 진학 등이 불가능합니다.)

면목고등학교장

4) 돌봄과 치유의 생활지도

(1)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 교육

검정에서 해주실 일은 무엇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전국민대상의 홍보다. 승인여중에 재직시 당시 은평경찰서 유경희 여청계장님 지원을 받아 제작한 학교폭력예방퀴즈 교육은 폭력예방에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45	2011 학교폭력예방퀴즈 6지구 생활지도협의회 2011. 11. 7. 중화중학교 	ket21	2011.11.06
 1239	2011 학교폭력예방퀴즈 지도법: 교직원연수자료(2011.3.7) 	ket21	2011.09.29
 616	2011 1학기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퀴즈    [1]	ket21	2011.03.03
 250	학교폭력예방퀴즈 2011: 결과보여주기 훈육의 꽃^^ 	etkorea	2010.12.28

<http://cafe.naver.com/ket21>에서 “학교폭력예방퀴즈”로 검색하면 문제와 정답 및 해설, 교육용 ppt, 실제 교육 동영상 등이 탑재되어 있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0년 조사, 2011년 보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 자신도 38.1%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열 명 중 네 명 가량의 학생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내용별로는 신체폭행(25.8%), 집단 따돌림(21.2%), 괴롭힘(21.7%), 금품갈취(12.9%), 언어폭력(8.6%) 위협이나 협박(3.3%), 성적인 추행(3.2%), 인터넷이나 휴대폰 욕설, 협박, 동영상촬영 피해(1.7%) 의 순서대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아울러 학교폭력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장난’(40.2%), ‘이유 없음’(23.1%), ‘오해와 갈등’(12.2%)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없이 장난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어른들 책임이다.

이를 위해

첫째 언론사의 협조를 얻어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자.

청소년 범죄 다발 유형을 분석해 콘텐츠로 제작해 공익광고로 방송해 달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때라 언론사와 연예인들의 협조를 얻기 쉬운 때다.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의 PD들을 모시고 직접 협조를 구할 수도 있겠다. 저도 그 자리에 도움드릴 수 있다

둘째 일전에 배치된 스쿨폴리스와 학교담당 경찰에게 질높은 학교폭력예방 교육 방법을 연수하자. 학교 방문 강의시 작은 상품도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데 도움을 준다. 예산을 지원해주자.

(2) 성찰과 회복을 위한 징계를 위한 교육계의 노력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징계가 되려면 규정에 대해 가능한 세부규칙을 정하고 홍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흡연의 경우 학칙이 강화됨에 따라 흡연 여부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도 어렵고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도 드물다. 해서 흡연물품 소지만으로도 혹은 화장실 한 칸에 학생 두 명이 있는 것만으로도 흡연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징계기간중 자기주도 학습 교재 개발 : <http://cafe.naver.com/ket21/1437>

2011년 : 지역아동센터 인증(면목고 사례) <http://cafe.naver.com/ket21/1270>

2012년 : 위클래스 개설학교 중심으로 지역 전문상담원 연계하여 특별교육

과정 운영 특기반 : 만화, 음악 풍선아트 등

교과기초학력반 : 한자 600 영단어 800반 등 개설

특기 있는 기간제교사 채용, 대학생 지원(부업 창출)

(3) 성찰과 회복을 위한 징계를 위한 사법계의 노력

① 아이들 조사할 때 유의하실 점

학생이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당한 일로 화가 잔뜩 나있는데 누군가 부모와 비슷한 말을 하면 “순간 착각”이 일어나면서 욕하고 대들게 됩니다. 교사나 경찰이나 모두 아이들 인격 존중 이전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초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관동대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수 교수

* 보호자 주소나 연락처 물을 때 이혼 상태의 학생이 상처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 ② 강력한 처벌보다 신속하고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 신속하려면 간편하고 상시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상이든 벌이든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효과가 가장 크다. 학교규정에 따른 흡연은 출석 정지까지 기타 사안은 **사회봉사까지 소선도위 즉 생활지도부장 전결로 위임가능**하도록 법률 정비해야한다. 대선도위의 상시적 운영을 위해 시간표 일람표를 보고 일과시간 중 최대 인원이 참석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정해 회의소집의 어려움을 덜었다. 이로 인해 생활지도부의 상담 능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었다.

검경의 역할분담에 대해 문외한이나 면목고의 사례를 볼때 소년사안에 한해 경찰에 재량권을 줘야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예방중심의 경찰행정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 ③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게 교사 멘토제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멘토링비용 기안이 절차가 복잡해 해당 교사에게 잡무가 되고 있다. 통장으로 입금해주셨으면.

소년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법연수생과 로스쿨학생들에게도 멘토링 봉사를 의무화했으면 한다.

(4) 재범의 방지

① 교육계의 노력

학교도 자퇴학생 추후 지도해야한다. 자퇴 학생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퇴학생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학교평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② 사법계의 노력

수사기관은 동시에 범죄예방기관이기도 하다. 생활지도부가 생활상담부로 진화하는 이유다.

특히 재범 예방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한번 수사를 한 청소년과 학부모는 담당수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추후 관리할 의무를 직무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매월이 어려우면 분기별 혹은 학기별 혹은 명절 등에 휴대폰 문자나 전화 필요시 상담까지 의무화하고 이를 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자. 현재 교사는 상담부서의 경우 네이스상에 상담기록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의 자기 실적평가서에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5) 장기 대책

① 연구 기관의 설립

학교폭력은 단기처방으로는 절대 근절 안된다. 남을 향한 폭력을 강제로 막으면 자신을 향한 폭력 곧 자살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청소년 범죄 전반에 대한 긴 안목을 갖기 위한 3년 기한의 연구기구를 제안한다. 국

회에 오십 억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아 스토리가 담긴 학교폭력예방 매뉴얼을 만들자.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가 늘 곁에 두고 참고할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 하자.

② 지역네트워크의 구축

폭력이나 학생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회복적인 협의체(Restorative Circle)의 역할을 운영해 본다. 이는 올해 새로 배치된 학교지원경찰관, 학교담당경찰, 지역아동센터, 위센터, 청소년수련관, 수련원관계자, 대안학교 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축해 지역네트워크를 구성 하여 적어도 학기에 한 번씩 만나도록 한다.

③ 전문성 향상

학교전담 경찰은 강력계가 아닌 여성청소년계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청소년문제는 달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공립학교가 5년 순환근무하듯 여성청소년계에 최소 3년 이상은 근무해 청소년 전문 경찰인력을 양성해 주실 것

소년부 전문 검사 판사를 양성해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법체계내에서 전문성을 향상시켜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최 순 호(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1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들과의 대화 개최 결과 (학교폭력의 실태 및 원인)

○ 학교폭력의 심각성

- 입시부담이 없는 중학교가 가장 심각, 학교폭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피
해자는 불특정 다수임

예) 한 학급 40명중 가해자 10명 이상, 피해자 20명, 집중피해학생 2명

- ‘일진’은 학교 인간관계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 영향력이 매우 커서
교사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학생회장조차 일진의 도움을 받음
- 폭력학생은 전학 후에도 폭력 행사

○ 신고의 어려움

- 신고시 보복 우려, 교사들의 무관심,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한 무지,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등으로 신고 꺼리는 분위기

○ 위법의식의 결여

- 폭력을 장난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범행
- 대부분 학생은 폭력을 목격하고도 재미있어 하면서 구경하는 등 방관자의 입장도 문제

○ 교사 등 학교의 소극대응, 실효성 없는 학교지킴이

- 왕따 피해사실을 말하면 오히려 전학 권유
- 주로 노년층으로 권위 없는 학교지킴이는 역할 미흡

○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

- 고아, 결손가정, 부모의 무관심 등 불우한 학생들이 뭉쳐 폭력행사
- 관심을 끌고 싶은 욕구, 외모지상주의, 대중매체의 폭력성 등

2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

○ 가해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 수사기관을 두려워하므로 폭력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입건과, 강력한 제재 필요
- 가해학생을 다스릴 수 있는 교권확립을 위해 교사에 폭언·폭행 행위 엄벌

○ 법교육 강화(현재 실시 중인 검사들의 학교방문 법교육 강화)

- 특히 법의식이 희박한 초등학생, 중학생을 상대로 적극적인 법교육, 인성교육 등에 의한 의식 전환이 필요
 - ※ 중학교 1학년 학기 초에 일진 등 세력관계가 형성

○ 상담지원 강화

-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진로상담이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부모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함(일진회 탈퇴 학생)
-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등 제도적 지원과 교사·학부모의 꾸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지속적인 왕따 피해 학생)
- 학교 내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설 상담소 설치

제 2 주제



소년사건 처리 개선 방안

“소년사건 처리 개선 방안”

김 진 숙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소년사건 처리 개선 방안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 진 숙 부장검사

1 소년사건 처리 실태 분석

☐ 소년사범 처리 현황

- 소년범죄는 2000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 2010년은 감소 (표 1)
 - ※ 소년인구가 감소함에도 소년범죄는 증가
 - ※ 2010년 감소는 경찰의 소년범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교육 후 불입건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됨
- 강력범죄 비율은 매년 3~4%로 일정, 폭력범죄 비율은 2000년 57.9%에서 2009년 36.2%로 감소, 재산범죄 비율은 2000년 37.3%에서 2009년 56.2%로 증가 (표 2)

- 재범율은 지난 10년간 30%를 상회하다가 2009년에는 40%를 상회 (표 3)
 - ※ 소년사범의 성인범으로의 전이율이 67%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검찰의 소년범죄 처리현황은 기소율이 2000년 30.7%에서 2010년 6.1%로 크게 감소하고, 소년부 송치율이 2000년 17%에서 2010년 33.6%로 크게 증가 (표 4)
- 소년사범 구속률은 1995년 23.5%에서 2011. 1.8%로 급감 (표 5)
- 법원은 기소된 소년범죄 중 30% 정도를 소년부 송치 (표 6)

2 소년사건 처리의 문제점

☐ 소년사범에 대한 비전문적 처리로 재범방지 효과 미흡

- 소년사건 전담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년사건이 초범은 기소유예, 재범자는 소년부송치 등 관행적 처리
- 소년사건이 형사부에 분산 배당됨에 따라 소년사건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 ‘검사의 결정 전 조사제도’ 는 이용 실적 저조

☐ 간편한 절차 선호로 소년부 송치 급증

- 소년부 송치 절차는 매우 간편한 반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소환, 서류준비 등 절차가 번거로워 바쁜 검사들이 소년부 송치를 선호

□ 소년법에 대한 미온적 처벌이 범죄 양산

- 소년법에 대한 기소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범죄 일반예방 효과가 감소
 - ‘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고가 소년들 사이에 팽배
 - 소년들의 위법의식이 결여되어 폭력, 성폭력을 장난의 일종으로 간주해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범행

□ 부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부담 프로그램 미비

- 소년의 가정환경, 특성, 죄질 등에 따라 범죄소년을 교화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부담이 부과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 부담조건만으로는 다양한 소년법의 특성에 맞는 교화개선이 미흡함
 - 현재로는 범죄예방위원이나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받는 조건, 저작권교육을 받는 조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교육을 받는 조건 등이 있음

□ 형사미성년자 연령인하 필요성

- 최근 정보화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소년들의 의식수준이 성장하고, 소년 범죄는 저연령화·흉포화 되어 가고 있음에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종전과 같은 만 14세 미만임
-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도 심각하고, 최근 형사미성년자의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
 - ※ 중학생이 학교 후배인 13세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한 구속사건에서 연쇄강간의 발단이 된 최초 강간범이 12세의 형사미성년자이어서 형사처벌하지 못한 사례

- ※ 중학생 2명이 또래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 1명이 형사미성년자이어서 형사처벌하지 못했는데 그 사건 이후 동일 가해자를 비롯한 중학생 7명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한 구속사건 발생

☐ 학생들과 범죄예방위원과의 세대차이

- 소년들은 문제학생과 소통, 공감할 수 있는 동년배의 그룹 멘토나 선배 또는 대학생 멘토를 원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범죄예방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범죄예방위원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효과적인 선도 어려움

☐ 피해자 보호 미흡

- 가해소년에 대한 처분에 주력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
 - 심리치료를 받고 싶은 학생들도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
- 신고시 보복 우려,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한 무지,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

3 소년사건 처리절차 개선 방안

☐ 소년사건 처리의 전문화

- 검찰에 소년전담부 설치 또는 실질적인 소년전담검사 제도 운영
 - 소년전담검사를 전문화하여 소년전담이 범방 관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년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함

※ 법원은 소년법원 설치 움직임까지 있는 데 비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업무 과중으로 소년사건 수사지휘만을 전담하고 있음 (2010년 서울 중앙지검 총 소년사건 수는 5,144건임)

※ 검찰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91. 9. 서울동부지검에서 최초 실시, 97. 9. 전국 실시, 99. 5.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설립, 2004. 활동 중단)’ 당시 범죄발생률이 현저히 감소 <표 1 참조>

- 당시 전국 형사부 검사 348명을 학교담당 지도검사로 지정, 검사 1명당 4~5개 중교교를 담당하여 개별면담, 선도예방활동 전개, 학교폭력사범 단속, 학생사건 집중 배당처리, 자율방법활동 지휘 등을 하였음

☐ 소년사범에 대한 통일적인 구속기준 마련

- 소년사건 구속율은 전국평균 약 3%정 도로 낮는데 현재 소년사범에 대해 따로 구속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소위 ‘일진’과 이에 동조하는 학생들의 집단적·조직적 폭력, 반복적·반인륜적 폭력, 성폭력 등 죄질이 불량한 중대 범죄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하는 등의 구체적 처분기준 마련 필요

☐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발굴

- 소년원 주말 체험 등 소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효과가 높은 안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 ※ 안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경기도에 위치하여 서울 지역은 적극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접근성이 용이한 검찰청사내에 비행청소년 상담교육센터 마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사회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도록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 범죄특성을 감안하여 교화 가능한 봉사활동 아이템 발굴
- 민간교육단체와 MOU를 체결, 교육·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 위탁
- 2개 이상의 부담을 병과할 수 있도록 조건 병과형 기소유예 시스템 정비
 - 현재 킷 시스템으로는 1명의 소년범에 대하여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움
- 소년범의 보호자가 함께 교육을 받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마련 필요
 - ※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진로상담이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부모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함”(일진회 탈퇴 학생 의견)
- 부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절차를 간소화
 - 소년부송치에 비해 부담조건부 기소유예 절차(소년 및 보호자 동의, 의뢰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서류간소화, 이메일 동의서 등 절차를 간소화 하는 조치 필요

□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 적극 활용 방안

-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이 일진인지, 평소 폭력성향이 심한 학생인지에 대한 결정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소년범의 결정전 조사실적을 청의 주요 업무실적으로 산출하거나, 소년부 송치 절차를 정비하여 소년부 송치 처분 시 검사의 결정 전 조사제도 이용 의무화
 - ※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주간업무실적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을 추가하였음

- 다만 결정전 조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사기간은 수사기간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 필요

☐ 범죄예방위원 구성 다양화

- 소년들과 대화, 교감이 가능하도록 범방선도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소년범들은 동년배의 멘토를 선호하므로 대학생, 교육종사자 등 인적구성 다양화
 - 선도위원을 재정분과, 멘토분과, 상담 교육 분과 등으로 세분하여 위원들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

☐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

- 현재 만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대폭 낮춰야 함
- 연령 인하가 어렵다면, 예컨대 살인,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하도록 보호처분의 종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개정 필요

☐ 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한 소년 보호처분의 항목 제한

- 현행 소년법에는 죄명에 상관없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처분이 가능

※ 2011. 12.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법원으로부터 전원 1호(보호자 등에 감호위탁) 2호(수감명령) 4호(단기보호관찰)의 가벼운 처벌을 받아 사실상 무죄판결 파문

- 죄명에 따라 양형기준의 제약을 받는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6호 이상의 중한 처분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소년법 개정 검토 필요

☐ 피해자 지원 강화

- 상담소, 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 ※ 범방위원별 전담학교를 지정, 학교폭력피해 상담활동 지원방안
- 소년사범 처분 시 피해자의 의사 적극 반영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처분 내용 결정에도 반영
- 피해자의 피해 회복,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참여하는 형사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

※ 별첨 : 소년사범 통계 도표 1~6

〈 별첨 〉

[표 1] 소년범죄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	소년범죄자수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범죄자 중 점유비율	인구비 (10만명당)
	소년 형법범	소년 특별법범	계			
2000	94,465(65.8)	49,178(34.2)	143,643	0.3	6.8	1,658.3
2001	82,746(63.2)	48,237(36.8)	130,983	-8.8	5.6	1,512.7
2002	75,982(65.8)	39,441(34.2)	115,423	-11.9	5.0	1,440.0
2003	67,135(70.0)	28,950(30.3)	96,085	-16.8	4.2	1,298.1
2004	51,298(70.5)	21,472(29.5)	72,770	-24.3	3.2	995.5
2005	50,652(75.1)	16,826(24.9)	67,478	-7.3	3.4	975.1
2006	50,846(73.5)	18,365(26.5)	69,211	2.6	3.7	971.1
2007	60,426(68.6)	27,678(31.4)	88,104	27.3	4.5	1,141.7
2008	79,766(59.1)	55,226(40.9)	134,992	53.2	5.5	1,447.1
2009	81,378(72.0)	31,644(28.0)	113,022	-16.3	4.5	1,318.0

* 출처 : 범죄백서 2010, 법무연수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은 형법범에 포함

[표 2] 소년 형법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2000	94,465	3,763(4.0)	54,662(57.9)	35,196(37.3)
2001	82,746	2,994(4.5)	49,186(59.4)	29,723(35.9)
2002	75,982	2,323(3.1)	37,872(49.8)	34,151(44.9)
2003	67,135	2,359(3.5)	31,401(46.8)	32,009(47.7)
2004	51,298	1,708(3.3)	21,788(42.5)	26,429(51.3)
2005	50,652	1,549(3.1)	21,009(41.5)	26,848(53.0)
2006	50,846	1,857(3.7)	18,104(35.6)	29,506(58.0)
2007	60,426	1,928(3.2)	23,275(38.5)	33,659(55.9)
2008	79,766	3,016(3.8)	34,067(42.7)	39,688(49.8)
2009	81,378	3,182(3.9)	29,488(36.2)	45,774(56.2)

* 출처 : 범죄백서 2010, 법무연수원

* 강력범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 폭력범 : 폭행, 상해, 공갈, 협박, 약취·유인, 체포·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등

* 재산범죄 :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2003년부터 재산범죄에 횡령 추가)

[표 3] 소년범죄자의 재범률

단위 : 명(%)

구분	계	전과없음	전과			
			1범	2범	3범	4범
2000	143,643 (100.0)	90,875 (64.5)	22,608 (16.0)	11,311 (8.0)	6,536 (4.5)	9,563 (7.0)
2001	130,983 (100.0)	80,942 (63.0)	20,942 (16.3)	10,342 (8.0)	6,218 (4.8)	9,986 (7.7)
2002	115,423 (100.0)	71,662 (63.5)	18,326 (16.2)	9,036 (8.2)	5,046 (4.5)	8,742 (7.7)
2003	96,085 (100.0)	61,025 (64.9)	14,751 (15.7)	7,263 (7.7)	4,106 (4.4)	6,893 (7.3)
2004	72,770 (100.0)	44,267 (64.3)	11,187 (16.2)	5,227 (7.6)	3,138 (4.6)	4,984 (7.2)
2005	67,478 (100.0)	42,017 (66.8)	9,307 (14.8)	4,601 (7.3)	2,672 (4.2)	4,335 (6.9)
2006	69,211 (100.0)	44,236 (68.9)	9,193 (14.3)	4,124 (6.4)	2,428 (3.8)	4,244 (6.6)
2007	88,104 (100.0)	55,543 (68.5)	11,540 (14.2)	5,332 (6.6)	3,090 (3.8)	5,585 (7.2)
2008	134,992 (100.0)	79,285 (69.1)	15,476 (13.5)	7,553 (6.6)	4,299 (3.7)	8,086 (7.1)
2009	113,022 (100.0)	65,990 (58.4)	15,103 (13.4)	7,637 (6.8)	4,799 (4.2)	9,044 (8.0)

* 출처 : 범죄백서 2010, 법무연수원

[표 4] 검찰의 소년범죄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기소			불기소			소년부 송치	가정 보호 송치	기타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 유예	기타			
2000	143,643 (100.0)	44,095 (30.7)	12,398 (8.6)	31,697 (22.1)	72,464 (50.4)	61,920 (43.1)	10,544 (7.3)	24,435 (17.0)	33 (0.0)	2,616 (1.8)
2001	130,983 (100.0)	42,884 (32.7)	9,646 (7.4)	33,238 (25.4)	63,994 (48.9)	53,493 (40.8)	10,501 (8.0)	21,221 (16.2)	62 (0.0)	2,822 (2.2)
2002	115,423 (100.0)	35,073 (30.4)	7,694 (6.7)	27,379 (23.7)	58,132 (50.4)	46,984 (40.7)	11,148 (9.7)	18,925 (16.4)	22 (0.0)	3,271 (2.8)
2003	96,085 (100.0)	23,938 (24.9)	5,743 (6.0)	18,195 (18.9)	51,163 (53.7)	41,953 (43.7)	9,660 (10.1)	17,208 (17.9)	37 (0.0)	3,289 (3.4)
2004	72,770 (100.0)	17,045 (23.4)	3,632 (5.0)	13,413 (18.4)	40,617 (55.8)	33,128 (45.5)	7,489 (10.3)	12,040 (16.5)	26 (0.0)	3,042 (4.2)
2005	67,478 (100.0)	11,350 (16.8)	2,771 (4.1)	8,579 (12.7)	40,486 (60.0)	33,683 (49.9)	6,803 (10.1)	13,555 (20.1)	10 (0.0)	2,077 (3.1)
2006	69,211 (100.0)	9,315 (13.5)	2,496 (3.6)	6,819 (9.9)	43,495 (62.8)	36,808 (53.2)	6,687 (9.7)	14,105 (20.4)	20 (0.0)	2,276 (3.3)
2007	88,104 (100.0)	10,367 (11.8)	2,815 (3.2)	7,552 (8.6)	54,424 (61.8)	44,689 (50.7)	9,735 (11.1)	21,368 (24.3)	22 (0.0)	504 (2.1)
2008	134,992 (100.0)	15,150 (11.2)	4,823 (3.6)	10,327 (7.6)	88,932 (65.9)	62,977 (46.7)	25,955 (19.2)	28,360 (21.0)	30 (0.0)	2,520 (1.9)
2009	113,022 (100.0)	7,795 (6.9)	3,929 (3.5)	3,866 (3.4)	71,100 (62.9)	56,715 (50.2)	14,385 (12.6)	32,453 (28.7)	37 (0.0)	1,637 (1.4)
2010	89,776 (100.0)	5,443 (6.1)	2,913 (3.2)	2,530 (2.8)	52,685 (58.7)	42,021 (46.8)	10,664 (11.9)	30,143 (33.6)	9 (0.0)	1,496 (1.7)

* 출처 : 범죄분석 2011, 대검찰청

[표 5] 소년사범 구속률

연도	1995	1996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11)
접수 (명)	131,896	147,028	~	92,976	86,014	92,643	116,135	133,072	134,155	105,033	94,643
구속 (명)	31,027	28,050	~	6,075	4,382	3,225	3,017	2,744	2,577	2,089	1,721
구속률 (%)	23.5	19.1	~	6.5	5.1	3.5	2.6	2.1	1.9	2.0	1.8

* 서울중앙지검 : 2000년 4.5% → 2005년 1.9% → 2011년 1.2%

[표 6]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결과

단위 : 명(%)

연도	계	무기형	정기형	부정 기형	집행 유예	벌금	선고 유예	무죄	소년부 송치	기타
2000	17,446 (100.0)	16 (0.1)	1,514 (8.7)	2,209 (12.7)	5,391 (30.9)	1,369 (7.8)	159 (0.9)	69 (0.4)	5,545 (31.8)	1,71 (6.7)
2001	9,483 (100.0)	-	70 (0.7)	2,039 (21.5)	2,875 (30.3)	564 (5.9)	61 (0.6)	10 (0.1)	3,375 935.6)	489 (5.2)
2002	8,305 (100.0)	1 (0.0)	73 (0.9)	1,876 (22.6)	2,549 (30.7)	631 (7.6)	44 (0.5)	10 (0.1)	2,755 (33.2)	366 (4.4)
2003	5,961 (100.0)	-	26 (0.4)	1,266 (21.2)	2,014 (33.8)	472 (7.9)	39 (0.7)	10 (0.2)	1,886 (31.6)	248 (4.2)
2004	5,212 (100.0)	1 (0.0)	25 (0.5)	956 (18.3)	1,795 (34.4)	503 (9.7)	53 (1.0)	15 (0.3)	4,192 (28.6)	372 (7.1)
2005	4,296 (100.0)	-	18 (0.4)	659 (15.3)	1,223 (28.5)	420 (9.8)	48 (1.1)	14 (0.3)	1,565 (36.4)	349 (8.1)
2006	3,543 (100.0)	-	18 (0.5)	624 (17.6)	934 (26.4)	367 (10.4)	54 (1.5)	9 (0.3)	1,265 (35.7)	272 (7.7)
2007	4,151 (100.0)	1 (0.0)	10 (0.2)	671 (16.2)	1,129 (27.2)	362 (8.7)	57 (1.4)	10 (0.2)	1,597 (38.5)	314 (7.6)
2008	5,026 (100.0)	-	215 (4.3)	531 (10.6)	1,504 (29.9)	554 (11.0)	55 (1.1)	14 (0.3)	1,717 (34.2)	436 (8.7)
2009	6,160 (100.0)	-	462 (7.5)	587 (9.5)	1,828 (29.7)	681 (11.1)	93 (1.5)	20 (0.3)	1,971 (32.0)	518 (8.4)

* 출처 : 사법연감 2010, 법원행정처

박 은 정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I. 서언

최근 대구에서 남자 중학생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문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형사사법 체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건수와 심각성에 비하여 그것이 실제로 신고되어 수사기관을 거쳐 형사사법 체계에서 처리되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입건된 가해 소년범들에 대한 형사 처리절차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여성·아동 전담 검사, 2006~2007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파견 근무

Ⅱ. 소년사건 처리절차(발제문 요약)

1. 소년사건 처리 실태 분석

- 발제문에서는 소년범죄가 2000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 중 강력범죄 비율은 매년 3-4%로 일정하고 폭력범죄 비율은 2000년 57.9%에서 2009년 36.2%로 감소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 또한 검찰의 소년범죄 처리 기소율이 2000년 30.7%에서 2010년 6.1%로 크게 감소하고 구속율은 2011년 현재 1.8%에 불과하며 소년부 송치율이 2000년 17%에서 2010년 33.6%로 크게 증가하였고 법원은 기소된 소년범들에 대하여 30%를 다시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 소년사건 처리의 문제점

- 발제문에서는 소년사건 처리의 문제점으로 소년사범에 대한 비전문적 처리로 재범방지 효과 미흡, 간편한 절차 선호로 소년부송치 급증, 소년범에 대한 미온적 처벌이 범죄를 양산하는 문제점, 부담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미비, 형사미성년자 연령인하 필요성, 학생들과 범죄예방위원과의 세대차이, 피해자보호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다.
- 즉 소년전담검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행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소년부 송치절차가 매우 간편한 반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절차가 번거로워 검사들이 소년부 송치를 선호하고 있으며 소년범에 대한 기소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범죄 일반예방효과가 미흡하고 소년범의 특성에 맞는 부담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년범죄는 저연령화, 흉포화

되어 가고 있음에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4세에 머물러 있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검찰에서 시행하는 범죄예방위원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 범죄예방위원들의 고령화로 효과적인 선도가 어렵고 가해소년에 대한 처분에 주력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내용이다.

3. 소년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 이에 발제문에서는 소년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으로 소년사건 처리의 전문화, 소년사범에 대한 통일적인 구속기준 마련,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발굴,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 적극 활용, 범죄예방위원 구성 다양화, 형사미성년자 연령인하, 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한 소년보호처분의 항목 제한, 피해자지원강화 등을 들고 있다.
- 소년전담검사를 전문화하여 검찰에 소년전담부 혹은 실질적인 소년전담 검사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으로 사료된다. 소년사건만 전담하는 소년부 판사제도가 있는 법원에 비하여 형사부 검사가 일반 사건과 더불어 소년사건을 함께 담당함으로써 관행적인 처분을 하고 있음은 사실이므로 소년전담검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소년전담 검사의 주요실적으로 산출한다면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강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제한하는 소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Ⅲ. 소년사범에 대한 형사사법적 제문제 검토

1. 학교 폭력 관련 소년사범 신고율 제고 문제

- 경찰청의 학교폭력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총 2,517명을 검거하여 그 중 143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¹⁾ 한편 대검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검찰에서 처리한 소년범 총 89,776명 중에서 폭력사범은 23,276명으로 파악되었다.²⁾ 그렇다면 경찰에서 검거한 학교폭력 사범에 대한 통계 외에 실제로 학교폭력의 전체 발생 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형편이고 이는 학교폭력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문제, 혹은 학교폭력이 발생되더라도 학교나 교육 당국이 공론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사료된다.
- 따라서 학교나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여 수사기관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교과부나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검찰,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보인다.

2.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 활용의 문제

-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하기 전에 판결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범에 대한 판결전조사를 요청하고 보호관찰관이 범죄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등 피고인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판결전

1) 2008년 2,5301명(구속 184명), 2009년 2,4825명(구속 131명)임.

2) 대검 2011년 범죄분석.

조사제도를 필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와 유사하게 검찰에서도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 대검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해 발생한 소년사범 중 폭력사범 총 23,276명 중 그 중에 재범자는 10,085명으로 43.3%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높은 재범률은 초범인 소년범들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다.
- 따라서 소년범들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검사는 반드시 결정전 조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보고서만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소년을 조사한 보호관찰관을 검사가 직접 불러서 소년의 현재 처지 및 성행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3. 기소유예의 실효성 제고

- 2010년 전체 소년범 23,276명 중에 그중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통계는 9,759명으로 41.9%에 달하고 있다.³⁾ 발제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교육효과가 높은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봉사활동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마련하고 2개 이상의 부담을 병과할 수 있는 조건병과형 기소유예 제도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 다만 이는 대검이나 법무부 차원에서 소년사범에 처리와 관련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고 예산이나 인력 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소년범 기소유예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문제이므로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대검 2011년 범죄분석.

4.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의 연소화, 폭력의 흉포화, 다양화, 반복화 추세, 피해자의 자살, 가출, 가정불화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영미 등 선진국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온정주의적 정책이 청소년범죄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반성과 아울러 엄격주의로 돌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에 중대한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재보다 하향하는 것이 소년범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교화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일반 성인범에 비하여 개선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년범들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교화와 선도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검사에게 처분의 재량권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5. 소년사건의 형사사법 운영문제

- 소년법상 범죄소년은 행위시 14세 이상, 보호처분시 19세미만이고, 촉법소년은 행위시 10세이상, 14세미만, 우범소년은 보호처분시 10세 이상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소년범에 대하여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이들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등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일반 사건과 같이 기소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여기서 촉법소년의 경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바로 법원에 송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상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이 공범인 사건에서 범죄소년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등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는데

비하여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 따라서 일부 소년법원 판사들의 경우 소년법에 대하여는 법원선의주의를 채택하여 일괄적으로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⁴⁾ 우선 검사선의주의를 입법화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일단 소년법원판사와 소년전담검사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업무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6.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 검찰은 범죄피해자보호센터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 의료지원, 신변보호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죄의 피해자도 그 대부분이 소년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현재 대검에서 예술치료연합회와 MOU를 체결하고 가해,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매우 효과적인 조치라고 생각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⁵⁾에 따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조치를 어겼을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장치를 구비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박종택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소년가정보호사건의 운영과제’(2009).

5) 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

7. 유관기관 협력·지원강화

- 현행 교과부에서 설치하여 운용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획위원회, 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대검,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교과부,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법교육 콘텐츠를 개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Wee센터 등에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타 교과부,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에 대한 행정제재, 교사, 학교당국의 불고지 처벌규정 신설 등도 검토할 문제이다.

IV. 결론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세대로서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학교나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내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소년범들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고 피해청소년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떨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소년사범에 대한 적절한 처분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더불어 실무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 3 주제



가해자선도 · 피해자보호 방안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 강화 방안”

성우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장)

“피해자 보호 방안”

배동인(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팀장)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 강화 방안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성 우 재 과장

I. 들어가며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하고 엄정한 처우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재발방지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교육적 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교육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더 큰 범죄자를 만드는 등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Wee 프로젝트(교과부), CYS-net(여가부), 스쿨폴리스 및 사랑의 교실(경찰청) 등을 운영해 왔으며, 민간에서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희망재단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본 자료에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위기·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발생과 처리과정 및 시간적 흐름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단계, 갈등조정 단계, 갈등해결 단계, 재발방지 단계로 분류할 때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예방단계에서의 사전 예방교육과 재발방지 단계에서의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 교육적 개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황

1. 설치배경 및 법적 근거

법무부는 '05년 7월 소년원의 개방적인 교육운영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기치 하에 기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대안학교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06년 3월에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법무부 차관이 관련 정책추진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 법무부 및 교육인적자원부가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에 공동참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07년 3월에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어 학교폭력 등 위기 및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과 재비행 방지 교육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에 설립 목적을 두고 '07년 7월 23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2018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전국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개소하였다.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 표 1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명칭 및 위치

센 터 명 (대외명칭)	소재지	관할지역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대안교육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지상리 1길 5	부산, 울산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창원대안교육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3번길 7	경남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대안교육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송림1길 21	광주, 전남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솔로몬로파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219-39	전국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대안교육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남지로 41번길 23	충북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안산대안교육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순환로 80	서울, 인천, 경기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외명칭을 ‘대안교육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에만 ‘솔로몬로파크’로 명칭을 사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2.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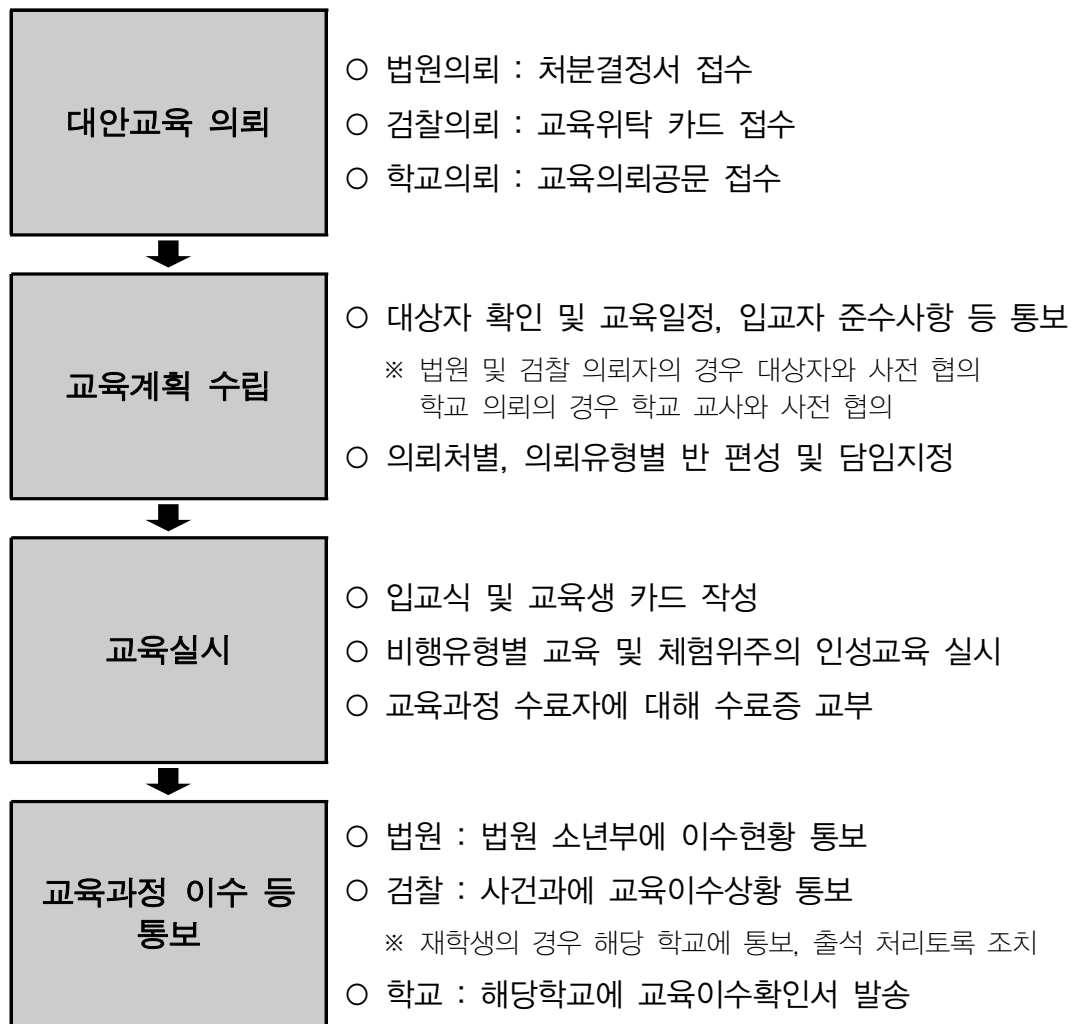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9조의2에 의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가. 대안교육

대안교육이란 학교폭력 가해 등 학교 부적응 학생, 기소유예대상자, 보호 처분자 등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해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 동안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의뢰기관별로 살펴보면, 우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따른 징계대상 학생으로서 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년법 제49조의3 제2호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교육을 의뢰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로부터 대안교육명령을 받은 소년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 표 2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절차



교육은 반별 10명 내외 최대 13명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주 35시간 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1일 7~8교시, 1교시는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주중에 휴일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로 집단강의 및 집단상담 형태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절도, 교통안전, 성비행, 중독예방 등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프로그램과 모의법정, 봉사활동, 장애체험, 생활예절, 미술 및 원예

치료, 생활도예, 등산 및 극기훈련 등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주 35시간 중 10시간 이상을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기관 특성에 따라 건물레펠, 임종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의뢰된 가해학생의 1주 교육과정 시간표는 <표 3> 과 같다.

〈 표 3 〉 교육시간표(예시)

구분	월	화	수	목	금
1교시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전문교육 (학교폭력)	전문교육 (학교폭력)	전문교육 (학교폭력)	전문교육 (학교폭력)
2교시					
3교시	심리검사 및 해석 (개별상담)	생활예절	장애체험	미술치료	생활도예
4교시					
점심식사					
5교시	명상 및 극기훈련	정보화역기능	소시오드라마	법교육	소감문작성/ 수료식
6교시					
7교시	전문교육 (학교폭력)	담임상담		교통안전교육	
8교시					

각 반은 담임제로 운영되며, 담임은 정규 교육시간 이외에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 등·하교 시간 등을 활용해 밀착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행동평가 기록지」를 활용하여 수업태도, 생활태도, 교우관계 등 세 가지 영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상·벌점을 기록하는 등 엄격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학교폭력상담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을 겸비한 법무부 직원들이다.

학교폭력으로 의뢰된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과 함께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폭력의 실상을 알고 폭력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변화시키기, 폭력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바르게 인식하기, 자신의 폭력 행동에 대해 책임감 갖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폭력을 바라보기,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찾고 적용하기, 선택과 책임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 배우기 등 이다.

회기 당 90분씩 5회기 분량이며, 도입(1회기), 영역별 활동(3회기), 마무리(1회기)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도입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다짐을 작성하고 진정한 친구를 생각하며 또래관계를 돌아보게 하였다. 영역별 활동은 폭력의 심각성 이해 및 폭력의 부정적 결과 탐색하기, 피해자 상처 공감하기, 폭력의 대안행동 찾기로 구성되었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대안행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게 하고, 미래 설계 및 정리하는 시간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에 대해 사후지도 및 교육성과 분석을 위해 3월과 9월에 교사 또는 보호자, 학생 본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설문 내용은 학생의 적응 실태와 교육효과 평가 등이다.

〈 표 4 〉 프로그램 구성

회기	회기명	활 동	목 표
1-1	나 이런 사람이야	· 프로그램 소개 · 운영자 소개 · 서약서 및 나의목표와 다짐 · 마인드맵으로 자기소개	○ 폭력예방 프로그램과 운영자에 대한 소개 ○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나의 목표와 다짐’을 작성한다. ○ 자기소개를 하여 서로간의 친밀감을 형성한다.
1-2	학교폭력?	· 폭력 퍼즐 · 폭력의 정의 및 유형 알아보기 · (폭력관련)알쏭달쏭 퀴즈	○ 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폭력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문제임을 안다. ○ 폭력과 관련된 퀴즈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는다.
2	학교폭력의 후유증	· 폭력의 심각한 현실 · 폭력의 후유증(피해자, 가해자) · 폭력 후 법적 절차	○ 폭력의 심각한 현실을 보며 폭력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임을 깨닫는다. ○ 사례를 통해 폭력의 후유증이 남기는 상처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폭력을 하면 어떠한 법적절차를 거치고 처벌받게 되는지 살펴본다.
3	폭력의 피해자는 누구?	· 폭력이 심해지면 병이 됩니다! · 나의 공격성 알아보기 · 피해자 상처 공감하기 · 폭력의 결과 탐색하기	○ 폭력이 심각해지면 병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 자신의 폭력행위가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됨을 인식한다.
4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 선택의 기로(폭력 vs 비폭력) · 혁진이 이야기 & 나의 이야기 · 화를 조절하는 방법 찾기 · 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자세	○ 폭력행위를 통해 실제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는지 탐색해보고 대안행동을 찾아본다. ○ 선택과 책임의 주체는 나라는 것을 알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를 배운다.
5	나의 미래 설계하기	· 가정과 학교에서의 어려움 극복하는 방법 찾기 · 행복한 미래 설계하기 · 나와 의 약속 작성하기	○ 가정과 학교 또는 사회에서의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 미래를 설계하고 나와 의 약속을 통해 긍정적인 미래상을 만든다.

나. 비행예방을 위한 법교육

법교육은 법 형성과정, 법 제도와 그것들의 기초를 두고 있는 원리와 가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자는 비행청소년 및 법교육을 희망한 중·고등학생, 일반학교 교사, 법무부 직원, 법교육 관련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교육 프로그램에는 중학생 대상 법사랑 캠프, 고등학생 대상 법치세상 캠프,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사 및 법무부 직원에 대한 연수,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전문가양성 연수, 자원봉사자 연수 등이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솔로몬로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06년부터 검사, 변호사, 교수 등 법률전문가가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예방, 기초 법질서 확립과 같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법률 강의를 제공하는 법교육 출장강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법무부에서는 경미한 교칙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재판부를 구성하여 벌칙부과 등을 하는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학생자치법정을 학교폭력에까지 확대 적용하면 학생들에 의한 자치적인 해결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소수로 되는 현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여 전반적인 학교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11년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범교육청과 학교문화 시범학교를 포함하여 388개교를 지원한 바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의 오프라인 법교육과 더불어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용 게임과 동영상 등 콘텐츠를 개발·탑재한 온라인 법체험 테마파크인 「법사랑 사이버랜드(<http://cyberland.lawnorder.go.kr>)」를 '11. 12. 19.에 오픈 했으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동영상, 웹툰, 동요 등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다. 보호자교육 및 가족솔루션 캠프

청소년비행은 대부분 보호자를 비롯한 가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비행청소년이 재비행을 범하지 않도록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이해 및 지도방법 등 역할개선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대안교육에 의뢰된 학생의 보호자 중 참여를 원하는 보호자와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에 의해 특별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다. 자원참가자는 일반적으로 대안교육 시작 당일에 2~4시간 과정, 의무참가자의 경우 법원에서 명령한 시간(일반적으로 6~8시간 과정)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족솔루션캠프는 사춘기 청소년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소통·나눔·기쁨을 주제로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의 장을 열어주고 문제 해결능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안산, 부산, 청주 등 3개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라. 비행진단 및 청소년심리상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피의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공소제기·기소유예 등의 처분결정 및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결정에 필요한 조사와 심리검사, 상담 또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및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능·적성·성격 등 각종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을 제공하여 가정 및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3. 주요성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이후 교육인원은 '07년 13,147명에서 '11년 88,364명으로 6.7배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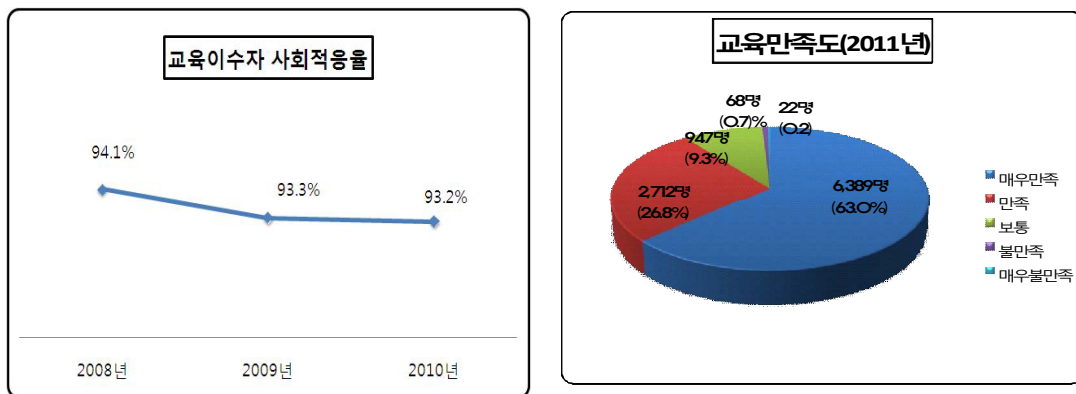
〈 표 5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인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대안교육	3,974	6,410	7,348	12,862	23,382
법교육	—	4,685	37,611	50,651	44,089
비행진단	4,660	6,531	5,401	5,698	5,422
청소년 심리상담	4,513	5,481	5,256	6,438	7,973
보호자교육	—	3,511	5,465	6,626	7,498
총 계	13,147	26,618	61,081	82,275	88,364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법교육, 체험교육 인원은 제외하였음

또한 '11년 교육수료 시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9.8%가 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육 수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시기에 학교 적응, 재비행 여부 등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93%가 학교 및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자 사회적응 및 교육만족도



※ 교육이수자 사회적응율 : 전화설문 응답자 '08년 8,376명, '09년 8,732명, '10년 8,793명 대상

이러한 양적·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비행유형별 전문 교육과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이 조화를 이룬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는 점이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부터 주간 교육과정 중 10시간 이상을 학교폭력 등 문제 행동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집중교육 형태의 비행유형별 전문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고, 이외 시간에 인내심을 기르고 정서를 순화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교육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자기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구성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은 인지적 변화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은 행동적·정서적 변화를 이끌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각 영역별 교육효과는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산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비행청소년 지도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부 교사들을 담임으로 지정, 밀착된 생활지도로 올바른 생활습관과 예절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는 점이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그동안 소년원학생 등 비행청소년을 교육해 왔던 직원들이 교육을 담당하여 왔다. 이들은 위기·비행청소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왔는지, 사회와 어른들에 대한 감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과 대화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한 교사들이며, 중등교사·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임상심리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다. '11년에는 직원 206명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주관하는 학교폭력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자격을 겸비한 법무부 직원들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기간 동안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왔다. 학교폭력 등 비행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애정 어린 보호자의 역할과 엄한 양육자의 역할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교육 참여 학생들은 대부분 강제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관계로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주고 받아들여주기만

한다면 교육적 효과를 이룰 수 없으며, 그렇다고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교육하다보면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일쑤다. 센터 교사들은 이런 교육생들에게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와 동시에 학생들이 규율과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왔다. 법무부 직원으로서 엄한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비행청소년 지도의 노하우 및 관련 자격 취득 등에 따른 전문성으로 애정 어린 보호자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었다.

셋째, 법질서 확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운영하여 교육 효과가 극대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폭력, 절도 등의 비행을 할 때 어떠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르는지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전문가인 센터 담임교사들은 교육과정 중 학생들에게 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재비행을 할 경우 어떠한 책임과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오는지 명확하게 교육하고 있다. 이때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법적인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함에 있어 센터 교사의 교육에 공적 신뢰감을 크게 느끼며, 이러한 이유로 추가 비행 또는 사건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는다. 아울러 교육생들이 센터에 입교하는 순간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엄정함 등의 느낌을 갖게 되고, 교육에 대한 마음 지세를 가다듬고 진지한 태도를 유지한다.

넷째, 학업단절이 예방될 수 있었던 점이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징계대상 학생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교육, 법원의뢰 대안교육명령 대상자 및 기소유예대상자 교육 시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업 단절을 예방할 수 있었다.

Ⅲ. 시사점 및 한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비록 짧은 5~10일 과정의 교육이지만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센터에서의 교육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편중설치로 인해 서울, 인천,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강원 등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동일한 교육적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등 사안 발생 후 교육적 개입이 즉시 이뤄져야 하지만, 교육 의뢰인원 폭증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을 받은 가해학생들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해 현재 어떠한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도 지역적 편중 설치 및 교육수요 충족의 어려움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 표 7 〉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처분 현황(2010학년도)

구분	가해 학생수	선도처분 현황(인원)										미조치 등
		선도 도치계	서면 사과	접촉 협박 금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초	657	608	222	70	12	15	150	24	102	13	-	49
중	14,179	13,947	1,176	547	80	784	5,444	2,393	2,366	1,157	-	232
고	5,113	4,998	451	199	43	330	1,617	1,071	969	225	93	115
소계(%)	19,949 (100)	19,553 (98.0)	1,849 (9.3)	816 (4.1)	135 (0.7)	1,129 (5.7)	7,211 (36.1)	3,488 (17.5)	3,437 (17.2)	1,395 (7.0)	93 (0.5)	396 (2.0)

※ 출처 : 국회 박영아의원 보도자료('11. 8. 25.), 학년도 기준임

다른 한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교육적 개입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지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 또래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음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개입과 아울러 사후지도와 심층 상담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검찰과 법원에서 폭력 비행으로 교육을 의뢰하는 대상자들은 학생인 경우가 많으며, 피해대상 또는 공범들도 대부분 학생들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폭력 문제로 확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 '11년 소년범죄에 대한 기소유예자 42,021명 중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은 1,124명으로 2.7%에 불과하다. 기소유예자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교육적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기소유예자에게 실시되는 보호관찰 또는 범죄예방위원의 선도가 더 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비행 예방 교육이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년 12월부터 청주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보호관찰 선도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의 대안교육을 연계한 '선도·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연계를 위한 노력들이 재비행방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V. 제언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어떠한 교육적 개입이 이뤄져 왔고 그 제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을 직접 교육해 보면 '장난이었다.', '피해학생이 그렇게 괴로울지 몰랐다.', '합의금 가지고 물건사고 웃으며 다니는 게 보기 싫었다.' 등의 표현이 많았다. 이러한

가해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서의 교육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의 확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Wee 센터, CYS-Net 등의 체계적 연계가 필요하다. 예들 들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단기간의 집중 교육이 실시된 이후 Wee 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원 등에서 심층상담과 사후 지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청소년희망재단, 교육청 특별교육위탁기관 등 유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과 정보 등을 공유해야 한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청소년상담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프로그램 공유를 위해 노력하였고, '08년과 '10년 두 차례에 걸쳐 안산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교류와 협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실시되는 이러한 교육은 반드시 학급별로 실시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선생님이 캠프를 통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폭력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08년부터 경기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선생님과 함께하는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과 선생님 모두 호응도가 높고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어 이러한 캠프를 통해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등 위기청소년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범정부 기관이

설치되기를 기대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교폭력은 학생 간 폭력으로 접근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이 교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폭력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해 나갈 때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들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폭력 등 위기청소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등의 중앙부처와 소속기관들, 그리고 민간단체들에서 부분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의 예방·통제, 그 피해자의 권리회복, 가해학생의 처우 등을 위한 실질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전담할 범정부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이러한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Wee 프로젝트, 여성가족부의 CYS-Net 사업, 경찰청의 사랑의 교실, 법무부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업무에 대해 정책적 틀을 짜고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 작업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정부 조직 편제 및 역할에 관한 법들을 정비해야 하며, 부처 간 의견합의 등의 복잡한 문제를 갖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을 교육하는 여러 기관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피해자 보호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팀

배 동 인 팀장

※ 현장 배포

고 금 자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교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청소년상담위원 범죄예방위원)

1. 발제내용의 좋은 점

먼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이 늘어나고, 가족 관계 균열 등 심화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드디어 대검찰청까지 나서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부처의 행정적 조치와 병행한 사법적 대응 모색을 강구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신데 대하여 그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격려드리며 더불어 토론자도 자부심을 갖게 되어 고마운 말씀을 전한다.

오늘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 강화 방안’에 관한 주제의 발제자께서는 노련한 설파방법으로 발표내용을 일목요연 세련되게 정리해주셔서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쉬워서 매우 좋았다.

또한 가해자 선도의 메카라고 칭할 만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설치 배경 및 법적 근거, 주요업무로서의 대안교육 절차 과정과 교육의 전체적인 시간표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내용까지 장점과 부족한 부분을 구분하여 스스로 지적하면서 실행과정에서 발견한 개선해야 할 점들까지 상세히 밝혀주었다.

특히 동 센터의 교사들인 법무부 직원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면서 질 높은 선도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학습태도를 갖는다는 느낌까지 전달받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교육내용에도 신뢰를 갖게 되었다.

나아가 보호자 학부형까지도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선도학생과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연결해주는 매우 고무적인 방침으로 실효성있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2. 보완점

몇 가지 흠족함에 흠뻑 빠지지 못했던 점은 대안교육 절차에서 대안교육 절차에서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을 교부한다는 점과 해당학교에 교육이수확인서를 발송한다는 점이다. 선도받은 학생의 입장에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에 저지른 죄과에 대해 노상 아픈 기억 떠올리게 할 수료증을 보고 좋은 기분이 들까 의문스러움이 앞섰고 혹시라도 받는 즉시 화장실 쓰레기로 구겨질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였다. 누구는 그 수료증에 대해 자부심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지는 하겠으나 일률적으로 수료증을 배부하기 보다는 선도학생 자신만이 추억할 수 있는 작은 가치 있는 기념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수확인서를 선도학생 누구나를 막론하고 해당학교에 보내는 것은 그 서류가 언제까지 어디에 보관될지 모르고, 폐기되지 않은 채 만일 학적부에 끼워져 불시에 타인에게 발견되거나 품행기록에 남아 상급학교 등에 진출하는 때에 쓰이게 되는 경우, 자칫 선도학생에게 치명적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또 다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어 재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시정하고 변화해야 할 점

- 1) 미흡했던 점으로 지적할 것은 예시이기는 하지만 교육시간표에서도 짜임새 있는 훌륭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에서도 선도학생이 가장 절실하고 어려워할 진로지도에 대해 한 줄도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재기 재활하여 선도학생이 앞으로 살아 헤쳐나아가야 할 사회에 대한 소개나 전문의나 심리전문가에 의한 상처에 대한 극복방법 감정 다스리기, 친구 이웃관계 유지하는 지혜를 익히게 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리라 본다.
- 2) 또한 전문적인 학교폭력교육에 배당되는 시간이 너무 넘쳐서 재발방지 교육에만 치중하는 것 같았고, 그 시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법무부 법교육 교재 중에 학생을 위한 생활법률에 담긴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방안을 세워주신다면 생활 속 지혜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 같다.
- 3) 교육기간에 있어서는 한 주일 이상 넘게 학교를 떠나서 생활하다보면 선도학생이 복귀할 때 빠르게 흘러가는 학교의 분위기에 재빨리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7일에서 한 달까지도 교육받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가급적이면 짧게 기간을 정하여 학교생활에서 이탈되는 분위기를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에 대해 가해선도학생의 입장에서는 비행예방 센터에 들락거리는 사실에 대해 남들로부터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찍힐까 거부하여 비호감이 아닐까 생각해봤다. 솔로몬 파크 서울지부 인천지부 대전지부 식으로 개명하면 보다 당당하게 드나드는데 거침이 없을 것이다.

4. 검토해야 할 점

- 1) 교육프로그램 상에 범죄행위별 구분을 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가해학생으로서 선도 받는 입장에서 가해자 본인의 충격을 어루만지고 다스리는 시간이 부족함은 알겠지만, 범죄행위 유형이나 성향별로 나누어 선도교육의 내용을 달리할 수는 있는지?

선도학생이 선도교육과정에 자기가 선호하는 스케줄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도록 여러 단계의 유형별 스케줄표를 제시하면 자율적 참여라는 기분이 들게 하고 지루함을 덜고 참여도를 높이지 않을까 싶은데.

- 2) 생활지도 중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선도학생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또는 축수가 미치지 못하는지 처리방침을 알려주시면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 3) 교육 선도의 미명하에 선도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수강 과정 도중에 이탈자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례를 들려주시면 앞으로 선도할 경우에 도움될 것이다.

5. 질 문

- 1) 가해학생 선도처분 현황에서 전학조치한 건수가 적지 않은데, 과연 전학의 효과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사숙고하여 보는지 필요불가결할 경우에만 전학처분을 내리게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권고전학 온 문제학생, 또 학교폭력 휘둘러”⁶⁾라는 기사에서 보듯이 문제

6) 연합뉴스, 2012. 1. 26.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다른 학교에서 권고전학을 온 문제 중학생이

학생으로 낙인찍힌 가해학생은 어디로 전학을 가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가면 못 돌아온다... 경찰은 구속수사 확대”⁷⁾하고, “학교폭력 추방... 모두가 나설 때다”, “인성교육 바탕에 엄격한 규칙 적용... 안전한 학교 기둥 세워야”⁸⁾라고 하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각 격리하고 분리시키는 데 주력할 뜻을 비쳤다. 또한 “학교폭력 은폐를 ‘성적 조작’과 같은 중대 비리로 간주해 처벌합니다.”라는 강력한 처벌의지를 천명하였는데, 과연 전학 등의 격리작업이 바라는 바대로 인성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발제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궁금하다.

- 2) 끝으로 강원경찰 학교폭력 근절 결의대회에서 “학교폭력 재범자 10명 중 7명 1년 이내에 또 폭력”⁹⁾을 한다고 하고, 한편 발제자께서는 ‘기소유예자의 보호관찰 또는 범죄예방위원의 선도가 더 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비행 예방교육이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 범죄예방위원이 재비행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지 궁금하고, 각 지역마다 범죄예방위원 선도위원들이 포진해 활약하고 있는데도 실효성이 미미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범죄예방위원들의 입지는 소년법 제49조3(조건부 기소유예)에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범죄예방위원들의 입지나 지위가 선도학생들에게 자원봉사자로 알려져 활동이 활발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새 학교의 동급생을 2년 간 상습폭행하고 돈까지 갈취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 7) CBS 노컷뉴스, 2012. 1. 1. ‘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 간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게 되는 등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감시 등이 강화된다’고 함.
- 8) 문화일보, 2012. 1. 30. 캠페인 시리즈 토론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은 “무엇보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각 격리하고 분리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학교장한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할 권한을 주고 학교폭력을 은폐할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야겠죠. 학교장의 권한으로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조치가 내려지도록 하구요. 또 학교폭력 은폐를 ‘성적 조작과 같은 중대한 비리로 간주해 처벌합니다. 또 1회 정학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도 추진 중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 9) 연합뉴스, 2012. 1. 27. 1년 이내의 학교폭력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없으신지, 국가가 언제까지 자원봉사자의 무조건적 희생을 통해서 범죄예방을 구현하도록 방치해야 하는지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는 2012. 2. 8. 세미나에 참여자로서 몇 가지 주장을 첨부하고자 한다.

I. 학교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관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

1. 우리나라에 학교폭력 처벌법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교 내외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으로 자살청소년들이 늘어나도 처벌법과 처분법을 구분하지 못한 채 오로지 인성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지도층이 입법을 가로막아서는 때문은 아닐지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학교폭력이 보다 강력한 대책없이 지지부진하다고 사회 각계가 시끄럽고 의견이 분분하다.

사람에 대한 폭력은 반드시 형벌로서 처벌받아야 할 중한 범죄이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한 행정적인 조치처분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모면해나갈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¹⁾이다.

동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

1) (출처 법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223호 2012. 01. 26. 일부개정, 2012. 7. 27. 시행)

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2. ‘처벌’과 ‘처분’의 구분 명확히 해야 이해하기 쉬워

사전적 의미로서의 ‘처벌’은 책벌이나 형벌에 처함, ‘처분’은 행정 사법 관청이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내용이 현저히 다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처벌’이라는 단어를 ‘처분’과 혼용해서 쓰고 있다.

‘자위행위 강요·동영상 유포...性的폭력급증,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에 시달리다 심각한 정신장애를 갖게 된 반면, 가해학생들에게 학교는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숨방망이 처벌**만 내렸을 뿐’이라는 지탄기사,²⁾ ‘폭력금지 문구만 있고 **처벌조항**은 없다’³⁾는 뉴스, “가해학생 및 부모에 대한 엄격한 징계 및 **처벌조치**를 시행해야 한다”⁴⁾는 여성지도자의 발언, ‘이제 그만’ 졸업식 교복 찢기·알몸기합 **엄중처벌**⁵⁾해야 한다는 기사나 “학교폭력 은폐를 중대한 비리로

2) 문화일보, 2012. 1. 13. 제하에 기사내용 중.

3) 헤럴드경제, 2012. 1. 13. 기사제목.

4) KOREA PRESS AGENCY 뉴스통신사, 2011. 6. 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공동세미나 개최 기사 내용 중.

5) 아시아경제, 2012. 1. 25. 제하에 특히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졸업식 알몸 뒤풀이’도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학생의 옷을 벗게 해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상태로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강요)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 모두

간주해 **처벌**⁶⁾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언약 등등...

모두가 한결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겨냥하여 쏟아낸 말들이다.

그런데 처벌법인 형법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처벌받도록 보장하는 법으로서 형벌권을 가진 국가가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죄명이나 양형이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만 처벌하는 법이다.

그에 비해 연신 뜯어고치고 붙이고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처벌법이 아닌 행정적으로 징계만 할 수 있는 처분법이다.

이러한 형법에서의 처벌과 교과부의 징계 처분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는 혼돈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재개정을 논하면서 ‘엄한 처벌’을 기대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본다.

더구나 ‘학교폭력 국가책무 강화 입법 추진’⁷⁾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발의했다는 기사를 보고 입법자들조차도 ‘처분법을 만지작거리면서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단속 대상이 된다.

6) 문화일보, 2012. 1. 30. <학교폭력 추방...모두가 나설 때>제하 캠페인 시리즈 정리토론회 기사 내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발언 중. 필자의 소견으로 이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보호법익에 따른 목적이고 취지대로 학생이나 학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은 학교 내에서 해결하도록 종용해야 하는 것인데, 충분히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갈 사안을 ‘학교폭력을 은폐한 비리’로 몰아 사건을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인용한 것임.

7) 데일리중앙, 2012. 1. 27. 기사제목, 한나라당 국회의원 학교폭력대책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2012. 1. 26. 대표 발의했다.

3. 학교폭력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필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⁸⁾은 제1조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그 기본은 헌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법이 추구하는 바로서의 보호법익이 무엇보다 먼저 학교라는 기관 보호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민의 4대의무를 꼽으라면 교육의무, 근로의무, 납세의무, 국방의무라고 대답한다. 그 중에 교육의무를 첫째로 꼽는 이유는 ‘교육을 잘 받아야 근로를 잘 할 것이고, 근로를 잘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잘 내게 될 것이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초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잘 받게 하기 위하여 국가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책무를 진다. 그것을 보장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04. 1. 제정되었다. 모든 법률제정에는 그 법률이 추구하고자 하는 각기 그마다의 보호법익이 전제되는데, 동 법률은 학생들이 평화롭게 학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학교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학교보호를 확실히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된다.

동 법률이 2004. 1. 29. 제정된 이후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쏟아내면서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사회 여론이 뾰족한 대책이나 해결책 없는 이말저말로 들끓기만 하고 있다.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223호 2012. 01. 26. 일부개정.

4. 타법에 의율하면 한층 더 가혹할 수 있어

그런데 동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동법 제2조 1호와 제2조 1의2호에서 정의하는 행위 유형들은 비록 학교 내외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형법과 형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등의 형법의 특별법 등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어서, 「소년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보다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다.

폭풍성장을 하는 걱정적 사춘기 속에 빠져있는 어린 학생들은 사고와 행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다반사적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행동제어능력이 성장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데 법률의 보호와 응당한 처벌만으로 극심한 학교폭력이 말끔히 해결되리라고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발등의 불을 놔둔 상태로 우리가 이미 지난 8년간 이미 써본 바 있는 장기적인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적 성숙이 무르익기만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실정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익히 인정할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많은 기사 등에서 회자된, ‘처벌’이라는 강력한 제도를 원한다는 속마음과 엄정한 학칙과 공정한 규칙을 통한 인성교육, 소통 상담 등의 유화 정책으로 선도하고 교화시키고자 하는 걸마음이 충돌하는 휘몰이 속에 피해

학생은 점점 늘어만 갈 것이 분명하다.

5. 학교 폭력의 실제 유형

학교 폭력의 범위와 정도는 성인의 범죄와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성인보다 더 충격적인 행위가 늘어감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며, 가벼운 툭툭 추근거리면서 건들임에서부터 흉기나 도구 등을 이용하여 폭력하는 경우까지 그 정도나 심각성이 다양하다. 특히 사이버 집단 괴롭힘은 거침없는 인신공격으로 나타났다.⁹⁾ 인터넷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일명 사이버 왕따행위)은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이메일, 메신저 등에서 소문전파, 메신저 집단차단, 카페공격, 이메일 해킹, 욕설과 비방, 모함, 강제 삭제, 안티카페 개설, 일촌 집단거부 등 익명성을 이용하여 교묘하고도 집요한 괴롭힘을 가하여 심리적 정신적 압박을 받아 자살하는 피해자가 점차 늘어나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 학교 내외에서는 아이들의 생명을 내건 위험한 수술게임,¹⁰⁾ 집단폭행 성매매강요,¹¹⁾ 갈취하고 담뱃불로 지지고,¹²⁾ 다리미로 화상 입히고,¹³⁾ 피라미드식 금품갈취,¹⁴⁾ 기절놀이 머리박기 ‘살벌한’ 조직활동¹⁵⁾등, 학교폭력

9) Safetoday, 2011. 12. 13., “사이버 집단 괴롭힘에 안전한가?” 제하에, 행정안전부, 2010년도 정보 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상 타인비방 경험자들은 주로 채팅(42.1%), 악성댓글(36.9%)을 통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뉴시스, 2012. 1. 13. “학교폭력① ‘수술게임’...아이들 ‘위험한 게임’ 아시나요” 제하 기사내용 중.

11) CBS 노컷뉴스, 2012. 1. 20. 집단폭행하고, 성매매 강요까지...“친구도 아냐” 기사제목.

12) 노컷뉴스, 2011. 8. 2. ‘무서운 여중생들, 같은 학교 학생 돈 뺏고 담뱃불로 상해’ 기사제목.

13) 부산CBS 노컷뉴스, 2011. 10. 3. 다리미로 화상입힌 ‘무서운 10대들’ 기사제목.

14) YTN, 2012. 1. 11. ‘중고생 상대 피라미드식 금품 갈취’ 제하에 서울 강남지역 동네 선후배들이 각자 서너 개의 구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학교 폭력을 배후 조정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5) 노컷뉴스, 2012. 1. 4. ‘기절놀이 머리박기’ 중학생들의 ‘살벌한’ 조직활동, 경기도 여주경찰서

의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근자에는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범죄수단으로 전락¹⁶⁾되어 앱의 규제가 요망된다고 한다. 과거에는 동원부대라고 하여 여럿이 뭉쳐서 이 방송국 저 방송국 공연장소에 연예인 찾아다니는 소녀들의 무리들이 함께 떼지어 몰려다니는 광경을 흔히 목격하였지만 이제는 핸드폰 문자로 은밀하게 각자 행동하고 소집장소에 게릴라처럼 나타나 순간적으로 뭉쳐서 열광 환호를 나눈다고 한다. 여러 개의 동원부대를 거느린 사회조직에 연결된 우두머리 학생들은 그 수입이 넉넉했다고 들었다. 어쩌다가 소집장소에 안가거나 못 가게 될 경우가 생기면 그 때부터 ‘왕따와 갈굼질’로 학교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한다.

그럼에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언제까지 미룰 수 있겠는가?

기성세대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기본적인 인성교육만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동안에 발등에 떨어진 심각하게 위험하고도 다급한 폭력현상은 더욱 기승하여 증폭될 수 있음이 예견된다.

‘쇠파이프’ 집단상납...도 넘은 10대 폭력¹⁷⁾ 등 일련의 사건들의 추이를 보면 학교폭력이 흉포화, 조직화되는 상황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는 단기적인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장기적으로도 학생들 사이에서 분명한 변화가 올 것으로 믿는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가해자가 반드시 학교학생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사회조직과 연계된 배후가 있는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 성인가해학생 처벌 위주의**

에서 집단검거.

16) 부산 노컷뉴스, 2012. 1. 16. ‘스마트폰, 청소년들의 스마트한 범죄 수단으로 전락’ 제하에 카카오톡 등 채팅 어플을 통한 성폭력, 성매매가 무차별적으로 횡행하고, 각종 성범죄의 도구로 전락되어 규제관리가 시급하다.

17) 춘천CBS 노컷뉴스, 2012. 1. 18.

정책보다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의 사후대책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예방 중심의 해결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를 갖지 않는다.

여러 유형의 범죄행위를 나열한 것은 추후 학교폭력 처벌법을 고안할 때 참작될 수 있게 하기위한 의도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란다.

6. 신고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2년간 돈 갈취 폭행당했으나 보복 불안에 못 알리던 “폭력피해학생 12명이 학교 대신 대전 모경찰서로 찾아가 “두려움 속 학교 다니기 싫어 용기내”¹⁸⁾어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였다.

아이들은 입학 당시부터 동급생으로부터 두들겨 맞고 공원화장실로 불러가 1만원씩 상납하고, 나중에는 점차 그렇게 요구하는 액수가 높아졌다며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원하는 바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7. 가해자 선도에 도움되는 것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나라의 기둥이 될 인재들이다. 학교폭력가해자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향하는바 목적대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사실의 경중을 불문하고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18) 한겨레, 2012. 1. 12.

사실 생활기록부에 기록¹⁹⁾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혀 장래가 불투명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인권을 복합적으로 침해하게 되는 심각한 사태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고, 죄가 안됨이나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시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게 하여 일반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돕는데, 하물며 인성교육강화에 힘쓰겠다는 학교에서의 가해기록을 장기간 보존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이 덜 된 가해학생에게 재기를 어렵게 하고 인격권 침해 등 다각적인 치명타를 안기는 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급하게 정리하느라 해결방안에 대한 부분은 뭉텅 삭제하였으나 학교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입법되기 위하여는 이 모든 것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들이라고 할 것이다.

19) 노컷뉴스, 2012. 1. 15. 기사제목,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초중고교생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밝혔다. 가해학생의 전학 퇴학 처분은 학생기록부 학적사항에 특기사항으로 명기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요구하면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된다. 이들 기록의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가해학생 조치 내용 기록은 초중등학교는 졸업 후 5년 간, 고등학교는 10년 간 보존된다.

제언자료



“학교폭력 근절 의견”

설 선 국 (장원중학교 생활지도부장)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및 비행에 대한 조치(징계) 방법”



학교폭력 근절 의견

설 선 국 (장원중학교 생활지도부장)

1. ‘체벌금지’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법제도

1. 잠을 자거나 말 대답을 하는 등, 교사의 충고를 듣지 않는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학교의 생활지도 주임인 딘에게 보낸다. 학생은 교실에서 격리되며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며 딘이 관할하는 디텐션룸에 머물게 된다. 딘은 교사 가운데 특별히 문제아 지도와 교육법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2. 학교는 학부모를 소환한다. 전화를 받은 학부모는 '내일'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한다. 직장이나 다른 핑계로 부모가 오지 않으면 '방임'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아이를 옳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 아닌 부모의 책임이다.
3. 학생의 유기정학권이 딘에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당장', 그리고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3회위반시 3~5일의 정학에 처해진다. 정학을 당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여 정학자들을 위한 교실인 정학실에서 담당교사가 보내준 과제를 소행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교사는 수업분위기를 고정적으로 해치는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진행한 후, 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교사는 안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5.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는 경우, 교사는 아무 때나 교육위원회에 전근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처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금이 보장된다. 또한 교사는 경찰에 폭력학생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학생은 자동적으로 무기정학에 처해지고 학교로부터 500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6. 교장은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낙제를 명할 수 있다. 대부분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점 미달이 되면 자동 낙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낙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교장은 문제아의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는 벌금형으로부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2. 유럽의 학생지도 사례

가. 터키의 학생생활규정(국가수준 : 2006년 방문)

1) 정학 수준

- ▶ 친구들에게 거칠게 대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행위
- ▶ 가벼운 징계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돈내기를 하거나 시키는 행위
- ▶ 학교내외에서 싸움을 하는 행위

2) 퇴학 수준

- ▶ 도둑질을 하는 행위
- ▶ 허락없이 교과수업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행위
- ▶ 수업, 시험을 방해하거나 시키는 행위
- ▶ 기사, 교사, 교감, 교장에게 심하게 대들거나 그들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
- ▶ 학교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오는 행위
- ▶ 학교에서 음주 또는 음주 후 등교하는 행위
- ▶ 불량단체 가입, 돈을 건거나,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3) 형사처벌 수준

- ▶ 사이버 종교와 어울리거나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 ▶ 규정을 지키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는 행위
- ▶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
- ▶ 수업, 시험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고문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 나라 법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

4) 터키 SAYIN고등학교 규정

- ▶ 필요시 선도부에서 소지품 검사를 한다.
- ▶ 등교 후 무단외출을 할 수 없다.
- ▶ 허락없이 등교시간전이나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있지 않는다.
- ▶ 과다한 돈이나 귀중품을 가져오지 않으며, 분실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
- ▶ 수업도중에는 선생님의 허락없이 절대로 밖으로 못 나간다.
- ▶ 수업중에 선생님을 방해하거나 친구들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는다.

나. 그리스 고린토 제10아르고스 중학교 : 2006년 방문

- ▶ 체벌 없고, 수업방해학생 교실밖으로 내보내고, 나간시간은 결과처리되고 누적된다.
- ▶ 폭력사안 발생시 : 1일~2일 정학(교장 재량), 2일 이상(교사협의회), 1주일(교장, 교사, 학생회장협의회), 퇴학(교장, 교사, 학생회장, 학부모협의회)
- ▶ 유예처리 : 중학교 60시간 결과, 고등학교 50시간 결과

3. 미국, 터키-그리스가 주는 시사점

- ① 수업방해에 대해 엄하게 처리(TIME-OFF 후 그 시간 결과처리, 60시간-유예)
- ② 기사, 교사, 교감, 교장에게 대들거나 그들의 일을 방해하는 학생은 퇴학 처리
- ③ 학교폭력 발생시 학생회 자율적으로 중재하고, 심한 경우 협의회
- ④ 무단결석 3회 이상일 때는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학부모 소환 지도(조례),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무단결석은 법원의 소환장 발부 및 학부모 구속(영국은 시행 중)

4. 교사에게 학생지도권한과 책임을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

- ① 교사에게 반항, 수업 방해, 타인의 수업 방해에 대한 엄격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 ▶ 생활지도부장 권한 부여, 당장 [학부모 소환-불응시 고발 제도] 법제화
- ② 학교장은 잦은 문제행동 아이에게 낙제 명령/ 학부모의 방임으로 고발 법제화
 - ▶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에 대한 책무성 강화(범칙금 징수, 학생과의 사회 봉사, 학부모구속 등)
- ③ 학교 및 교사의 책임 강화
- ④ 검찰-경찰청이 주관하는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 ⑤ **학생지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들: 학교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

【수업 및 등교 불량 유형】

- ▶ 아침에 등교했다가 1교시 중에 무단결과(조퇴)를 해도 같은 날짜에 결과 1회로 처리
- ▶ 마지막 시간에 등교거나, 학교에서 점심만 먹고 가도 같은 날짜에 무단 지각 또는 조퇴 1회 처리
- ▶ 수업 중 슬그머니 나갔다가 종례시 교실에 들어오면 무단결과 1회로 처리

【비행】

- ▶ 수업 시작 후 다른 반 교실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하고 들어와도 지각이나 결과처리가 안 되는 학교가 많음.
- ▶ 도둑질한 심증은 있어도 정확한 물증이 없으면 지도의 어려움
 -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하가교의 무책임, 불신임, 무능교사로 취급 받음

【 제안 】

- ▶ 출석일수 2/3이상이면 학년과정 수료 규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을 수업시수 개념으로 개정해야 한다.

⑥ 교사에게 학생 생활지도권한 법적 부여

【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

- ▶ 가해학생을 상담 또는 사실관계를 조사할 권리(현재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잦음, 그러므로 긴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학교 폭력 사안에 어려움)
- ▶ 학교폭력자치(소)위원회 구성운영(경미한 폭력), NEIS입력 등 업무처리 간소화

【 도벽 사안 발생시 】

- 교사가 의심이 가는 학생 포함 주변 학생들에게 소지품을 검사 권한 법적 부여
- 또는 물건 분실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학교자체 규정제정이 가능 조치

【 교외지도 및 유해업소 계도시 】

- 생활지도 교사에게 학생지도권 법적 부여(2000년 이후 사라짐 : 자체 교외지도 감소)
- 유해업소를 출입하여 학생들을 찾고 계도할 수 있는 권한 법적 부여 또는 분기별로 교사, 범방위원, 경찰과 합동 유해업소 계도 실시

참 고 자 료

1.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및 비행에 대한 조치(징계) 방법

구분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비행 (선도위원회)	기본생활 위반 (생활평점제)
종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주, 흡연, 도박, 도벽, 기물파손, 부정행위, 불건전한 이성관계, 교사지시불이행, 교사폭행	용의복장 불량, 지각 수업중 휴대폰 사용 수업태도 불량, 지시불이행
조치 /징계	제11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고교)	징계기준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5. 퇴학(고교)	벌점부여 봉사활동 자치법정 참여 등

참고자료



“2010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I.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학교폭력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관련 정부부처와 교육청, 경찰청 그리고 교직원, 학부모 및 관련 민간단체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 CCTV설치, 배움터지킴이, 학생인권조례, 학교보안관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와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상이다.

지난해에 ‘깡서틀’이라는 신조어의 발생과 더불어 ‘대한민국 깡서틀 연합회’라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인한 여고생 동반자살, 여중생 구타 동영상 사건, 학교폭력 괴롭힘에 대해 흥기를 이용한 여중생 보복 상해 사건, 집단폭력으로 인한 남중생 사망사건,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여중생 보복 살해 사건, 구타와 교복을 찢는 등의 졸업깡 사건들이 10년 전과는 분명히 다르고, 지난해와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다시 한번 심각한 사회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으며,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행태는 날이 갈수록 그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다.

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2010.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임.

이처럼 급변하는 학교폭력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학교폭력실태조사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연구이다.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 중 전국 단위 학생 설문을 포함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김준호 외(교육인적자원부·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2; 교육인적자원부·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1), 박효정 외(한국교육개발원, 2006; 한국교육개발원, 2005),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조사로써, 간략히 살펴보면, 김준호 외(2001, 2002)는 학생 외에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연구를 포함하였으며, 박효정 외(2005, 2006)는 교사 대상 조사를 포함하였다. 김준호 외(2001, 2002)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실태 및 원인 파악 등을 중심으로 전국단위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체계화하고 추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3)의 연구는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폭력 및 집단따돌림 실태에 대해 2회 실시, 비교 분석하였으며, ‘온라인 설문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박효정(2005, 2006)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 일반 실태 및 피해 실태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실태 연구를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시행되었다.

또한 2006년부터 매년 실시 된 청예단의 학교폭력실태조사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과학적인 표본 설계 및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한 전국단위의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최근의 학교폭력 경향을 알아보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고, 이전의 자료와 비교하여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청예단(2006~2009년)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이어 전국단위의 과학적인 표본 설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을 지향하되, 설문 문항은 ‘학교폭력의 범주’를 실제 학교폭력 사건들의 범주를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인 피해 실태 등을 눈에 띄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라고 할 수 있는 유형들의 내용을 정하고 전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일반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즉, 이전 연구들의 문항은 학교폭력 범주를 유형별로 나누어 유형별 피해 실태를 알아볼 수 있거나, 심각한 피해 유형과 덜 심각한 피해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청예단의 연구는 ‘학교폭력’에 속하는 피해 유형들을 몇 가지로 정의하고, 그러한 피해 유형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여 전체 실태 및 유형별 실태를 함께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피해의 범주는 신체폭행, 금품갈취, 언어폭력, 위협 및 협박, 괴롭힘,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성추행 등으로 유형화하였고 설문 문항은 이러한 유형들을 대표적인 행동 방식으로 기술하여 학생들이 해당하는 내용을 표기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신체폭행은 피해 경험의 경우, ‘신체를 맞았다’로 등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2006년도 연구 이후 2007년~2009년도 연구에서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되어 사용하도록 시도되었다.

이번 2010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이러한 2006~2009년도의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설문 문항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변형하고 문항 내용들을 보완하여 실시되었다. 즉, 2006년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목격, 대처 및 예방 실태로 구분되어 실시된 것을 보완하여 2007년도 연구는 학교폭력 일반, 피해, 가해 실태로 나누어 실시되었고, 2008년도는 일반 실태, 피해 실태, 가해 실태, 목격 실태, 예방교육 및 기타 실태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되었고, 2009년도 연구는 기존의 5가지 영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뺑서들, 따돌림, 사이버폭력, 괴롭힘, 성폭력’을 얼마나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2010년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는 기존의 일반 실태, 피해 실태, 가해 실태, 목격 실태, 예방교육 및 기타 실태의 5가지 영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몇 가지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우선 ‘괴롭힘(아바타 행동 및 뺑서들), 사이버폭력, 성폭력, 졸업뺑’을 얼마나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교폭력 인식도 척도를 각 영역별로 1문항씩 나누어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측정함과 동시에 충실한 응답여부를 알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최근의 학교폭력 경향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폭력의 유형에 졸업뺑과 학생간의 권력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표집에 있어서는 2007, 2008,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16개 시도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인문, 전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 배부와 온라인 설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표집과 조사방법 관련한 내용은 ‘Ⅱ. 연구 설계’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즉, 이번 연구는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하면서, 2006년도부터 실시된

본 기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구조와 내용들을 보완함으로써 설문을 실시하는 학생들의 정보를 보다 신뢰있게 수집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경향과 피해 및 가해 관련 실태, 목적 및 예방교육, 인식도 실태 등의 결과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의 목적과 목표

이번 조사의 목적은 2010년도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관련 견해 및 피해, 가해, 목적, 예방교육 등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목표 1.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견해 및 피해 실태, 가해 실태, 목적 실태, 예방 교육 실태 등을 파악하여 2010년 학교폭력 실태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 ▶ 목표 2.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피해 유형 등 주요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성별,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대상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과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 ▶ 목표 3. 주요 조사 결과 내용을 종합하여 2010년도의 중요한 학교폭력 경향성과 특징을 파악하고 지난 연구들과 비교한 전반적인 학교폭력의 변화 추이를 알아본다.
- ▶ 목표 4. 이번 연구 결과의 주요 특징과 경향성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전문 시민 단체 및 국가 차원에서 주력해야 할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1) 모집단

본 조사는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설문 조사가 가능한 5학년과 6학년에 한정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전 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조사가 힘든 3학년을 제외하고, 1학년과 2학년에 한정하여 수행되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의 빈도나 양상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로 나누어 조사가 수행되었다.

2) 표본 설계

본 연구에서는 층화군집법을 사용하였다. 층화변수로는 학교급(초, 중, 일반고, 전문고)과 학년, 그리고 지역(시도)을 사용하였다. 우선 학교급을 층화 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학교급에 따라 학교폭력의 실태가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고등학교 급이라도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사이에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를 것으로 간주되며, 학년에 따라 표집이 필요한 것은 학년별로 학교폭력의 실태가 다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학교폭력의 실태가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층화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3개의 층화 변수를 통해 만들어진 층화셀(stratified cell)은 9(학년)×16(시도)=144개이다.

층 내에서는 학교를 선정하고 그 학교 내에서 한 개 학급을 추출하는 군집표집법을 사용하였다. 군집표집법을 사용한 이유는 학교 내 학생 전체에 대한 학생 정보를 수집 불가능하다는 한계 때문이다. 그래서 학급별로 동일한 학생들이 고르게 배분되었다는 가정 아래서 한 개 학급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조사 내용

1) 조사 내용의 정의

본 조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의 실태 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우선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는 이번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념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즉,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적 정의를 기본으로 학교폭력 피해의 범주를 크게 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괴롭힘, 사이버 폭력, 성추행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정의한 후 학교폭력 관련 피해 및 가해, 목격 등 실태를 조사하였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들 사이에 신체폭행, 금품갈취 등 신체적·재산적 피해와 따돌림, 괴롭힘,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 그리고 인터넷에서 욕이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이버 머니, 게임 아이템을 뺏는 행동, 그리고 같은 성별이나 다른 성별간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동, 추행과 같은 성적인 폭력 등의 피해를 말한다.

본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이러한 개념 정의를 기본으로 학교폭력에 관련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견해를 알아보는 문항들과 피해 경험 관련 실태 문항, 가해 경험 관련 실태 문항, 피해·가해 경험이 없지만 목격 경험 관련 실태 문항, 그밖에 예방교육 관련 실태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 학교폭력 실태 문항을 구성하였다. 한편 ‘학교폭력’ 관련 정의는 일반적인 견해 실태와 피해 실태, 가해 실태, 목격 실태, 예방교육 실태 등으로 구분된 각 장에서 관련 장의 내용에 맞게 문맥을 조금 수정하여 다시 한 번 정의해 주고 각 장의 설문 문항을 제시해 주었다.

2) 조사 세부 내용

본 조사의 내용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는(6문항)과 학교폭력 관련해 일반적인 견해를 알아보는 문항(10문항), 피해 경험 관련 문항(19문항), 가해경험 관련 문항(11문항), 목격 관련 문항(3문항), 예방교육 및 기타 문항(9문항)으로 총 58문항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덧붙여, 설문 내용은 이러한 학교폭력 실태 문항 외에 성별, 학년, 가족관계 등 기본 인적 사항 5문항을 포함하며, 지역(16개시도) 코드와 반번호(소속 학교)를 표시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의 설문 문항 내용은 2006년~2009년도 까지 본 기관에서 실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문항들을 기본으로 하고 선행연구와 본 기관 상담 자료, 내부 상담자 논의, 외부 자문,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제작된 것이다.

3. 조사 방법

이번 조사는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학생들에게는 인터넷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설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자가 체크하는 방식의 ‘온라인 설문 실시’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학생들에게는 ‘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2009년의 조사에서 온라인 방식에서의 조사방법의 변경에 대한 타당한 신뢰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실태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 중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컴퓨터의 사용이 편리하며 온라인상에서의 문서 작업에 친숙한 청소년의 특성과 연구자가 전국의 설문 실시 결과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설문 배송 비용 등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에 대한 고려로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시하는 학교의 사정에 맞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학교에서는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번 2009년도 온라인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온라인 설문지 상의 오류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시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교 1, 2학년(인문) 각 학교급별, 학년별 대상과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한 예비조사를 통해 온라인 조사라는 방법의 변경에서 올 수 있는 중대한 차이를 줄이고자 하였다. 즉, 이번 조사의 이러한 방법상의 변경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조사 실시를 위한 설문 문항을 기본으로

표집된 예비조사 대상 학생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을 비슷한 비율로 실시하여 차이를 비교하고, 예비조사 실시시 발견된 문항 내용의 오류와 표기방식 등을 다소 수정하였다. 또한 온라인 설문 문항 제작과 데이터 수집에서 올 수 있는 오류들도 확인·수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본 조사(온라인 설문, 오프라인 설문) 실시

본 조사는 조사 대상자 전체 학생에 대해 온라인 설문과 오프라인 설문을 함께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개 시도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인문, 전문) 약 4,000명 이상의 학생들(표집인원: 3,5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사이트와 지면 설문지를 통해 실시되었다.

온라인상의 설문은 전국의 조사 대상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온라인 설문 사이트를 개설해 학생들이 자가 체크하는 방식으로 응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학급 단위로 표집한 이번 조사에서 학급 전체 학생들은 학교 컴퓨터실로 이동하여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교사 또는 컴퓨터 과목 지도 교사 등 교사의 지도하에 온라인 설문에 응하였다. 교사들은 설문 실시 전 공문과 전화 연락을 통해 이번 조사의 개요와 취지, 조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급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 담당교사(학생부장 교사 또는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컴퓨터실에서 학급 단위별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학교의 섭외는 통계 DB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1차에 섭외되지 못한 학교들은 다음 차수로 무작위 추출하여 재섭외하는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오프라인 설문으로는 설문자료 배포 후 수거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기관 지부 실무자 및 예방교육센터 담당자, 교육청 및 학교 연계 교사 등을 통해 설문지 실시 및 수거가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의 오프라인 설문은 응답자의 자기기입(Self-Administered)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 실시자(학교 교사 및 사회복지사, 본 연구기관의 실무자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담당자 등)는 ‘설문지 실시 안내문’을 참조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지 및 OMR카드를 배포, 실시하고 설문지와 OMR 카드 모두를 수거, 배송하였다.

학생들은 A4 크기(5면) 설문지에 직접 응답을 체크한 다음 OMR카드에 설문지 기재내용을 옮겨 마킹하였다. 설문지와 OMR카드는 모두 무기명으로 기재되었으며, OMR카드의 일련번호는 조사자가 모두 수거 후 일괄적으로 마킹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수거된 오프라인 설문자료와 온라인설문자료 중 응답의 불성실, 무응답 등 부실 응답을 제외한 3,560명이 사용되었다.

2) 분석 방법

본 조사의 분석을 위해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 12.0/15.0을 사용하였다. 주로 사용한 분석 방법으로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가족관계 분포 분석을 위해 다중응답을 실시하였고, 친구 수의 경우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실태 중 학교폭력 일반 실태 및 피해, 가해, 목격, 예방교육 및 기타 실태 등 모든 문항에 대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학교폭력 피해 실태 중 피해경험율과 피해유형(1순위)에 대해서 성별과 학생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순위별(1, 2, 3순위)로 다중 응답하는 문항(학교폭력 피해 유형, 피해 이유, 도움요청 방법, 가장 도움이 된 방법, 도움요청하지 않은 이유, 가해 이유, 가해 후)에 대해서 다중응답과 순위별 가중치 합산 방식을 사용하였다.

셋째, 학교폭력 실태 중 학교폭력 추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본 기관 또는 이전 선행 연구의 주요 실태 결과와 비교하여 추세를 비교·제시하였다.

Ⅲ. 분석결과

2010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전국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조사이다. 본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은 서울 등 14개 지역에서 3,560명이었으며, 본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교폭력 일반실태, 학교폭력 피해실태, 학교폭력 가해실태, 학교폭력 목적 실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각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지역분포

표 1. 지역분포

항 목	빈도(명)	백분율(%)
서울	347	9.7
인천	27	0.8
부산	52	1.5
대구	373	10.5
광주	72	2.0
울산	45	1.3
경기	129	3.6
강원	509	14.3
충북	949	26.7
충남	595	16.7
전북	54	1.5
전남	105	2.9
경북	289	8.1
경남	14	0.4
합계	3,560	100.0

본 연구는 전국 14개 시도 지역에서 총 3,560명의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지역적으로 충북(26.7%), 충남(16.7%), 대구(10.5%), 강원(14.3%) 등이 많은 분포를 보였다.

2) 성별 및 학년(계열) 분포

표2. 성별 분포

항 목	빈도(명)	백분율(%)
남성	2,202	61.9
여성	1,357	38.1
합계	3,559	100.0

무응답: 1명

본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61.9%)이 여학생(38.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년 분포

항 목	빈도(명)	백분율(%)
초5	187	5.3
초6	277	7.8
중1	583	16.4
중2	436	12.2
중3	680	19.1
고1	631	17.7
고2	766	21.5
합계	3,560	100.0

본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학년은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 5학년’은 5.3%, ‘초등 6학년’은 7.8%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중1’(16.4%), ‘중2’(12.2%), ‘중3’(19.1%)로 전체에서 47.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고1’(17.7%), ‘고2’(21.5%)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4. 고등학교계열

항 목	빈도(명)	백분율(%)
일반계	841	60.2
전문계	556	39.8
합계	1,397	100.0

무응답: 216명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60.2%)가 ‘전문계’(39.8%)보다 많은 분포를 보였다.

2. 학교폭력 실태

1) 학교폭력 일반 실태

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빵셔틀’(54%), ‘졸업빵’(64.3%), ‘홈피옥설과 악성댓글을 다는 것’ (65.1%),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것’ (79.3%),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69.1%) 가 ‘학교폭력이다’ 라고 응답하여 학생들이 어떤 것이 학교폭력인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간의 권력을 구분 짓는 ‘계급이 존재 한다’(15.2%), ‘모르겠다’ (37.5%)로 나타나 권력과 계급 존재에 대한 생각이 적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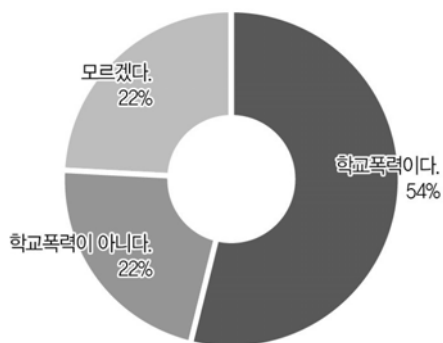


그림 1. 학교폭력 인식도(빵셔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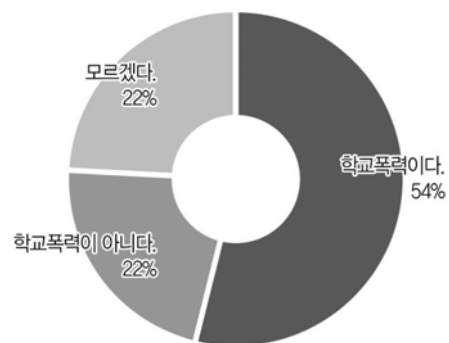


그림 1. 학교폭력 인식도(졸업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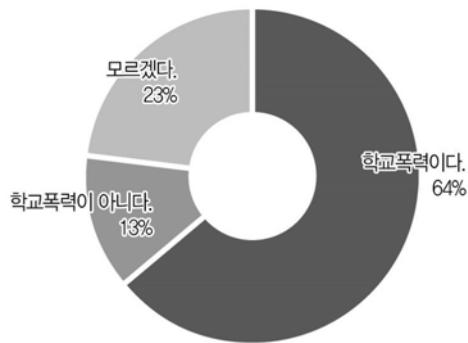


그림 2. 학교폭력인식도(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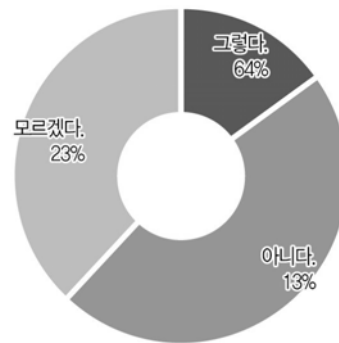


그림 3. 학생간의 권력과 계급 존재여부

②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38.1%)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18.1%)보다 많으며, 내용별로는 신체폭행(25.8%), 집단 따돌림(21.2%), 괴롭힘(21.7%), 금품갈취(12.9%), 언어폭력(8.6%), 위협이나 협박(3.3%), 성적인 추행(3.2%), 인터넷이나 휴대폰욕설, 협박, 동영상촬영 피해(1.7%)의 순서대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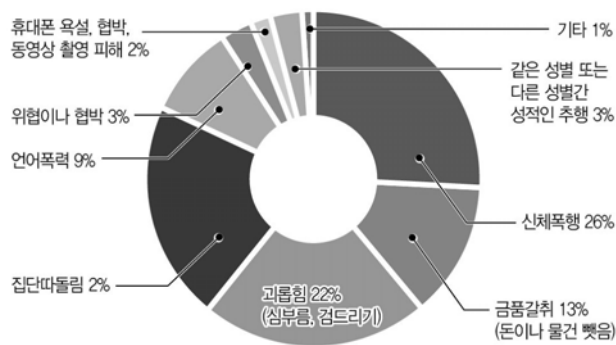


그림 4.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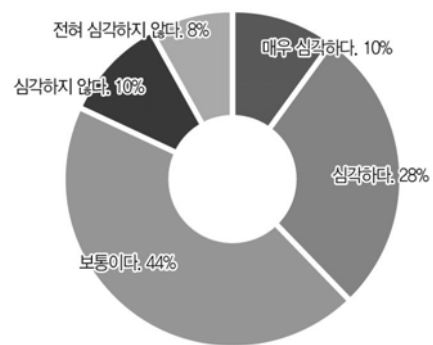


그림 5. 학교폭력심각성

③ 학교폭력에 대한 이유

전체 학생들이 보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장난’(40.2%), ‘이유 없음’(23.1%), ‘오해와 갈등’(12.2%)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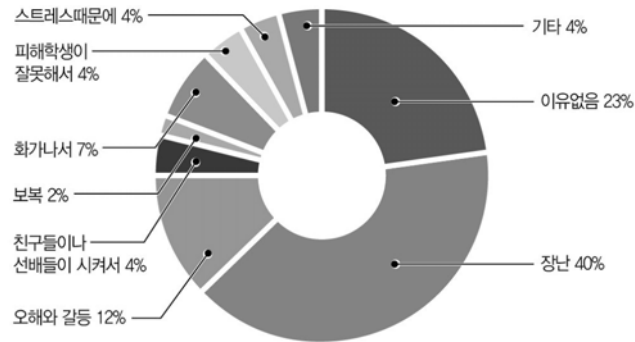


그림 6. 학교폭력가해 이유에 대한 생각

④ 학교폭력에 대한 영상 매체의 영향

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매체가 학교폭력에 끼치는 영향은 약 과반수의 학생들(53.7%)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폭력써클의 존재 유무 및 견해

폭력써클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없다’(31.2%, 1107명)가 ‘있다’(16.5%, 587명)보다 많은 분포를 보였다. 그 외에 ‘모르겠다’는 52.3%(1,856명)로 나타났다. ‘폭력써클이 있다(16.5%)’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써클에 관련한 견해를 알아본 결과, ‘폐지 강한 처벌’(50.3%), ‘학교생활 어렵게 하고 분위기 흐림’(22.0%)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폭력써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⑥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대처 및 예방법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린다’(39.1%), ‘경찰서에 신고한다’(12.4%), ‘함께 싸운다’와 ‘학교폭력 관련 외부 전문기관에 상담한다’(11.5%), ‘친구와 방법을 의논 한다’(7.8%), ‘말로 하지 말라고 한다’(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법으로는 학교폭력의 주요 효과적인 예방방법으로는 ‘평소에 친구들과 잘 지낸다’(42.5%), ‘가해학생 처벌 강화’(22.9%), ‘학교 안에 전문상담교사,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CCTV 설치’(12.9%), ‘선생님이 학교폭력에 관심 있게 지도’(10.1%), ‘정기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5.8%)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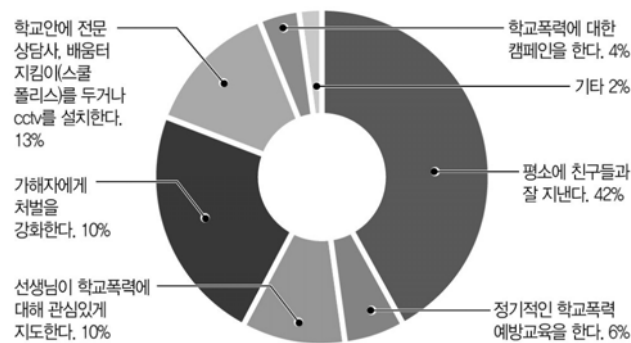


그림 7.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법

2) 학교폭력 피해 실태

① 재학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재학기간 동안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22.6%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 하여, 10명 중 2명은 학교 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중 21.1%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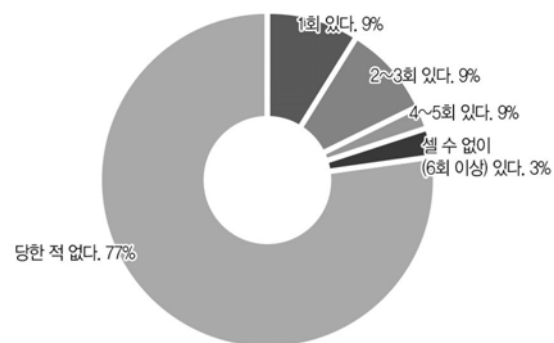


그림 8. 현재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②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10명 중 2명 (22.7%)’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피해 기간에 있어서는 ‘하루~2주 미만’ 등 단기간 피해가 가장 많았지만(56.1%), ‘3개월 이상 피해(299.9%)’의 비중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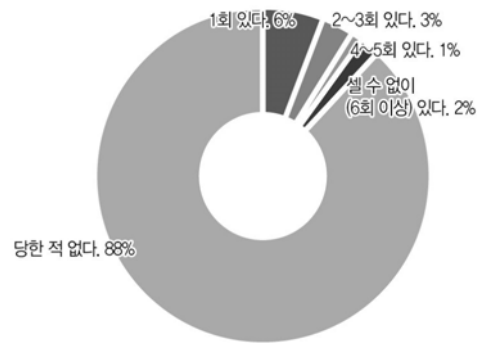


그림 9. 최근 1년간 학교폭력피해 경험 유무

경험은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회 있다’(6.0%, 5.0%)와 ‘2~3회 있다’(3.9%, 2.4%), ‘셀 수 없이(6회 이상)있다’(2.4%, 1.0%)로 나타났다.

③ 가해 학생의 특성(피해 학생 보고)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아본 가해 학생들의 특성으로는 2회 이상 피해의 경우 처음 피해를 준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련되어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처음 피해준 사람이 계속 피해줌’(44.0%), ‘처음 피해준 사람이 친한 주위사람’(33.4%). 또한 가해학생들은 ‘같은 반 학생’(54.8%)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다른 반 학생’(20.2%), ‘같은 학교 선배 또는 후배’(8.2%)로 나타나 주로 같은 학교에서 피해를 입고 있었다. 또한, 가해학생 수로는 ‘2~5명’(49.9%)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1명’(33.8%), ‘6명 이상’(16.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1명’(40.3%)과 ‘2~5명’(46.0%)이 높았지만, 여학생은 ‘2~5명’(60.3%)과 ‘6명 이상’(22.4%)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④ 학교폭력 발생 시간 및 장소

피해를 당하는 장소는 학교 교실, 복도, 화장실 등 ‘학교 내(75.2%)’ 비중이 높으며, 피해를 당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시간 등 ‘학교 내(68.8%)’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⑤ 학교폭력 피해유형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맞았다’(1위),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2위), ‘말로 협박이나 위협을 당했다’(3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겼다’, ‘집단적 따돌림’ 등도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유형(1순위)은 남학생의 경우 ‘맞았다’(48.3%)와 ‘돈이나 물건 갈취’(10.7%)가 높은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33.6%)과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18.1%)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학교급별에 따른 피해유형(1순위) 분포는 전반적으로 ‘맞았다’(21.6%, 23.1%, 24.2%, 59.7%, 48.1%, 50.8%, 38.0%)가 각 학교급별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는데 그 다음으로 ‘초5’, ‘초6’, ‘중1’의 경우에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각각 21.6%, 33.3%, 23.1%)이 높았다.

⑥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중, 대해 60.8%가 ‘고통스러웠다’고 보고했고, 그 중 13.9%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보고하여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실로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경우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가 (23.3%), ‘많이 고통스러웠다’가 (20.7%)로 남학생의 (10.4%, 19.7%)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로 학교 등교거부 충동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47.8%)를 제외하고 일년에 최소 1번 있다가 52.1%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10회 이상) 있다가’ (11.5%)로 나타났다(무응답 3144명). 응답자 416명 중 학교폭력 피해로 자살생각에 대해 ‘전혀 없다’(69.2%)를 제외하고 ‘1번 있다’ 이상이 30.9%로 나타났다. (전체 3560명 중 무응답 88.3%, 3145명) 3,560명 중 ‘일년에 1~2번’(1.7%), ‘한 달에 1~2번’(0.5%), ‘일주일에 1~2번’(0.4%), ‘지속적으로 (10회 이상) 있다’(0.9%)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을 ‘지속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학교폭력 피해 ‘도움요청’(32.25%), ‘요청안함’(68.75%)으로 나타나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요청 안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들(4.0%)의 비율과 결석일수

(‘1주 미만’ 61.8%, ‘1주 이상-2주 미만’ 13.2%, ‘5주 이상’ 8.1% ‘3주 이상-4주 미만’ 8.1%, ‘4주 이상-5주 미만’ 5.1%, ‘2주 이상-3주 미만’ 3.7% 순임)를 알 수 있어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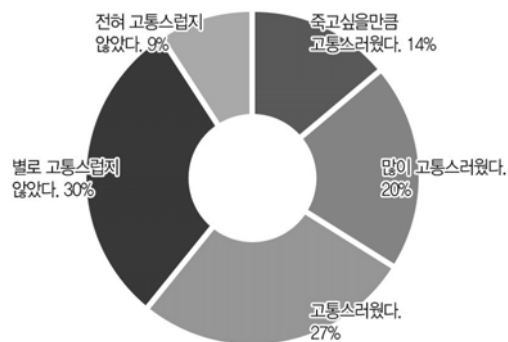


그림 10. 학교폭력피해 고통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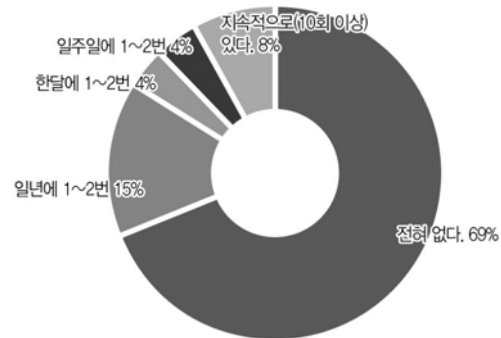


그림 11. 최근 1년간 학교폭력피해로 자살생각 여부

⑦ 학교폭력 피해이유

피해경험 학생들이 보고한 피해를 당한 이유로는 ‘만만해 보임’(1위), ‘아무 이유 없거나 모름’(2위), ‘내 성격이 소심해서’(3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⑧ 도움요청 유무 및 방법

피해학생 중 ‘요청함’(42.5%, 175명)보다 ‘요청안함’(57.5%, 237명)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1위),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위), ‘보복당할 것 같아서’(3위) 등이 있었다.

도움요청을 한 학생들(35.7%)의 경우, ‘부모님께 도움 요청’(1위), ‘학교 담임선생님께 도움 요청’(2위), ‘친구에게 도움 요청’(3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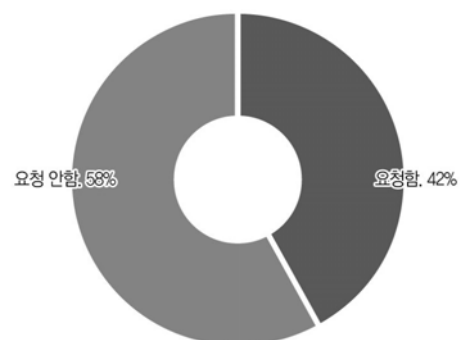


그림 12.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시 도움요청여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순위가 ‘부모님께 도움 요청’이 높았으나 남학생의 경우 2순위가 ‘학교 담임선생님께 알려 도움 요청(24.0%)’, 여학생의 경우는 ‘친구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20.8%)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도움 요청 방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⑨ 학교폭력 극복방법

이전에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극복 방법을 물어본 결과 주요 학교폭력 극복 방법은 ‘부모님이 도움’(1위), ‘학교 담임선생님께 도움 요청’(2위), ‘학교생활지도부 선생님 및 자치위원회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았다’(3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혼자 힘으로 해결했다’(4위) 등도 나타났다.

3) 학교폭력 가해 실태

①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경험

재학기간 동안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20.9%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 하여, 10명중 2명은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중 31.1%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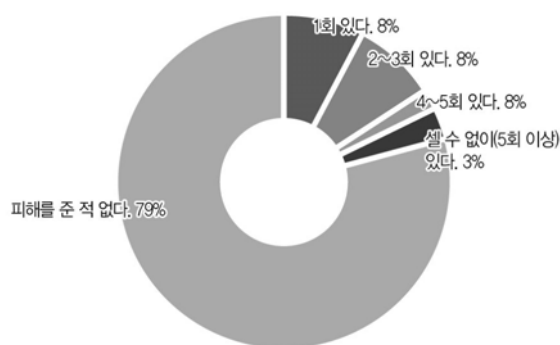


그림 13. 학교폭력가해여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초4학년-6학년’(26.9%), ‘중학교 1학년’(11.6%)이 높은 반면에 여학생은 ‘초4학년-6학년’(41.0%), ‘중 1’(9.7%)이 높았다.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시기의 추세가 초 4-6학년에서 정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준다.

②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를 한 적이 있는 학생들(11.4%)은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11.8%)로 나타났다. 가해를 경험한 학생들 중에 ‘1회 있다’(8.1%)의 단회성보다는 ‘2회 이상’(20.9%)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 방법을 보면 ‘때렸다’(1위),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2위), ‘말이나 협박이나 위협을 했다’(3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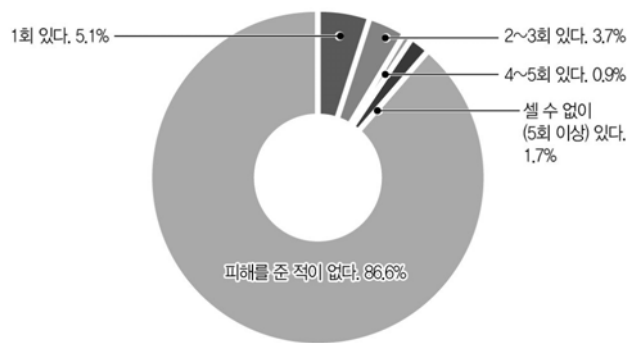


그림 14.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여부

③ 가해학생의 특성(가해학생 보고)

피해학생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주는 사람은 같은 학교 학생의 비중이 높으며(71.9%), 가해학생의 집단성과 관련해서 ‘혼자서 함’(42.4%)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2-5명’(28.5%), ‘1명’(12.4%), ‘6명 이상’(16.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함께 한 사람 수가 1명 이상이 경우가 57.6%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가해학생들 자신이 가해 시 했던 역할은 ‘아무 생각 없이 구경 한다’(26.2%), ‘같이 때리고 괴롭히지는 않지만 옆에서 말로 부추긴다’(23.7%),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때리고 괴롭힌다’(13.9%), ‘먼저 나서거나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같이 때리고 괴롭힌다’(13.6%) 등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학교폭력 가해이유

가해를 한 이유는 ‘장난’(1위), ‘상대 학생이 잘못해서’(2위), ‘오해와 갈등’(3위)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 ‘화가 나서’(225점), ‘이유 없음’(206점), ‘스트레스 때문에’(94점) 등도 제시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장난’(30.9%), ‘상대학생이 잘못해서’(22.3%)가 높은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상대 학생이 잘 못해서’(23.4%), ‘오해와 갈등’(19.8%)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교급별에 따라서는 ‘초 5’의 경우는 ‘상대 학생이 잘못해서’(38.0%)가 높은 반면에 ‘초 6’, ‘중 1’, ‘중 2’, ‘중 3’, ‘고 1’, ‘고 2’의 경우에는 ‘장난’(각각 21.7%, 22.7%, 26.2%, 38.3, 27.8%, 1.5%%)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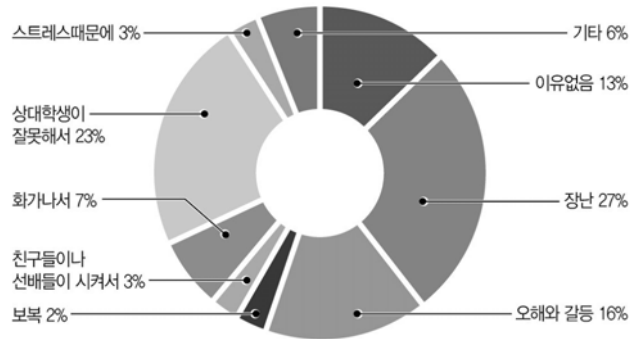


그림 15.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이유

⑤ 가해 후 상황

가해를 한 후 가해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1위),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일이 좋게 해결되었다’(2위), ‘학교 담임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들었다’(3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피해학생 부모님이 연락을 해서 꾸지람을 들었다’(144점), ‘학교에서 처벌을 받았다’(106점) 등도 나타났다.

⑥ 가해행동을 하지 않게 된 이유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지만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가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1위), ‘학교 담임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들었다’(2위), ‘학년이 올라갔거나 학교 졸업 등의 환경이 바뀌었다’(3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피해학생 부모님이 연락을 해서

꾸지람을 들었다’(175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생각이 변했다’(129점) 등도 나타났다.

⑦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모두 있는 경우

조사 전체 응답자(3,560명)에서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은 366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실태에서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있는 학생의 비율이 약 10.28%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그들의 기본적인 인구현황을 분석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71.2%) 여성보다(28.8%) 많았다. 그리고 학년의 경우 초등학생(17%)보다 중학생(54.1%)과 고등학생(28.9%)이 많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계열은 일반계(52.8%)가 전문계(47.2%)보다 약간 많았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실태에서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하는 학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예방과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학교폭력 목격 실태

① 목격한 학생들의 특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30.2%)은 목격하지 않은 학생들(69.8%)보다 적었다(이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거나 준 경우를 제외한 사건의 목격 경험을 말함). 다른 사람의 학교폭력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 1,059명중에는 과반수이상(62.0%)이 ‘모른 척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외에 ‘함께 말림(17.1%)’, ‘선생님께 알림’(9.9%), ‘부모님께 알림’(3.1%), ‘경찰에 신고’(1.0%), ‘상담센터에 상담’(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목격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모른 척 하였다’(60.7%), ‘함께 말렸음’(21.8%), 등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모른 척 하였다’(64.1%), ‘선생님께 알림’(13.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목격 시 대응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나타났다.

② 예방교육이 목격한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

예방교육 유무 모두에서 ‘모른척함’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모른 척함을 제외하고 함께 말리거나 타인에게 알리는 경우를 살펴보면 ‘단순한 비디오나 영상물 시청’(31.7%),

‘학교 선생님의 훈계 말씀’(35.8%), ‘동영상을 활용한 학교 선생님의 교육’(46.6%), ‘학교폭력 전문 상담 기관 선생님의 강당강의’(39.4%), ‘학교폭력 전문 상담기관 선생님의 방송 및 시청각 강의’(41.8%), ‘학교폭력 전문 상담 기관 선생님의 학급강의’(29.3%), ‘경찰관 교육’(44.6%), ‘기타’(55%)로 나타났다. 또한 예방교육의 유형별로는 동영상을 활용한 학교 선생님의 교육이 ‘모른척함’의 비율을 상당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학교폭력 목격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

학교폭력을 보고 나서 신고하지 않은 하는 이유로는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27.5%)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관심이 없어서’(24.6%),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최근 1년간 학교폭력피해 목격시 모른 척 한 이유

5)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태 및 기타

①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들은 최근 1년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우(71.7%)가 받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으며, 이 중 ‘2회 이상(34.0%)’이 ‘1회(37.7%)’보다 높았다. 예방교육의 방법으로는, 주로 ‘단순한 비디오나 영상물 시청’(26.7%),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

선생님의 강당 강의'(22.6%), '학교폭력전문상담기관 선생님의 방송 및 시청각 강의'(13.6%), '동영상을 활용한 학교선생님의 교육'(13.1%), '경찰관 교육'(11.1%)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②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 필요성 및 인식도

학생들은 학교폭력 전문 상담 기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61.6%). 그리고 본 조사실시 기관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2007년 6월부터 학교폭력 무료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SOS지원단'에 대한 인지 여부(알고 있음 14.6%)와 서비스 경험 여부(서비스 경험 있음 8.3%) 실태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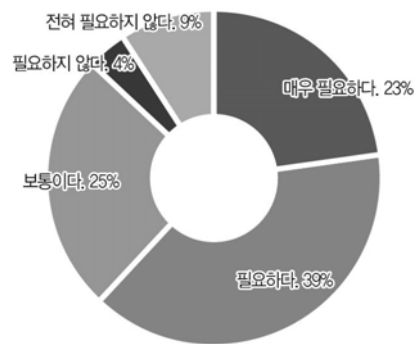


그림 18. 학교 폭력 전문상담 기관 필요성 여부

IV. 논의

1. 최근 학교폭력 경향에 따른 실천적·정책적 함의

- 1) 정부는 점점 심각해지는 폭력과, 이로 인한 청소년자살, 등교거부 등의 폐해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규를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고통 받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고통스럽다고 한 학생은 60.8%, 자살을 생각해 본 학생이 3.6%, 등교거부 충동을 느껴본 학생이 11.2%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각해진 학교 폭력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와 문제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 2) 경쟁위주의 교육방식이 아닌 함께 생활하는 학생에 대한 인성 및 의식 교육을 확대·실시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목격하고 모른척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27.5%), ‘관심이 없어서’(24.6%)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적위주의 교육과 인성교육의 부재가 불러 온 것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인성교육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다각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3) 괴롭힘, 따돌림 등의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으로 피해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보호조치와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뺑서틀’, ‘졸업뺑’, ‘홈피 욕설과 악성댓글을 다는 것’,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것’,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 등의 매년 잔인하고 지능화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폭력, 금품갈취 등 눈에 보이는 폭력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괴롭힘,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와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4)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강도 있는 처벌조치, 특별교육 등 제대로 된 선도와 교육을 위한 법률 정비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는 가해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관대한 처분만을 내리고 있는 시정이다. 학교폭력 가해 후 발생한 일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41%,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일이 좋게 해결되었다’(30%)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되지 않은 처벌은 자신의 가해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갖게 되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낳는 양상이 된다. 또한 가해학생들이 단지 처벌만이 아닌, 잘못된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과 교육이 적절히 병합되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미디어매체와 게임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 대책과 청소년 보호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연구 결과 학생들이 미디어매체가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 경우가 53.7%로 나타나 미디어매체가 청소년의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력적인 온라인게임, 영화, 격투기, 선정적 방송, 난무하는 안티카페와 악성댓글 등의 폭력성 미디어에 대한 규제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6)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및 지원과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상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전문기구를 설치·확대하여야 한다.

7) 학교는 학교폭력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신고와 보호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목격을 하였으나 모른 척한 경우가 62.0%로 나타났다. 이유에는 ‘피해를 당할까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의 의견이 높았다.

이에 학교폭력 목격 시 대처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는 신고의무를 높이고, 목격자에 대한 안전 조치와 비밀보장을 하여야 한다.

8) 각 지자체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전문적인 예방과 조치를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과 예산편성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심각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수적이며,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선도교육과 처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지역사회 보호체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9) 학교는 교사를 위한 전문연수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의무 실시가 필요하다.

학교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교사 전문교육과 학부모 예방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유형의 폭력도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학교 교사와 부모로부터 우선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는 교사를 위한 학교폭력 대응 전문연수 및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교사의 초기 응대력을 강화시키고, 학부모의 대처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언

본 연구는 5년 연속 시민단체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하여 학교폭력 현황 분석과 대안 제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연구는 방법 상 14개 시도 학 학교급별, 학년별 대상의 분포를 고려해 고른 표집이 이루어져 더욱 신뢰할만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진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학교의 표준화된

환경에서 실시된 검사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설문을 함께 실시하여 인력적, 비용적 측면의 효율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측면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 학교폭력의 극복 방법 등에 대해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번 연구의 의의와 함께 아래와 같은 한계들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문항 설계에 있어서 이번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와 상담 자료들을 토대로 하기는 했지만, 충분한 이론적 배경과 경험적 연구에 의해 타당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누락되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가 현장에 적합하면서도 표준화된 설계에 의해 뒷받침 되도록 하는 점이 보완된다면 더욱 가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과 오프라인 설문을 함께 진행하면서 문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문항에 답하는 등의 다소 오류를 일으켜 학생의 이전 응답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분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전년도 연구와는 달리, 2010년의 연구에서는 14개 시도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전, 제주지역이 제외되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을 하지 못하는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이 보고서를 마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이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에게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나 경쟁의식을 가지기 보다는 친구와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시대의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 교육인적자원부 (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청소년폭력예방사업 종합평가 보고서(2007),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준호 외 (2002), 200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청소년폭력예방재단.
- 문용린 외 (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 박효정 외 (2005), 학교폭력 실태의 이해와 진단, <연구보고 RR 2005-17>,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 외 (2006),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보고 RR 2006-8-4>, 한국교육개발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청소년폭력실태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보도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보도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7), 2007년 학교폭력SOS지원단 사업결과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6), 2006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7), 2007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8), 2008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 2009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42호, 2009. 5. 8, 일부개정].